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19
----------	------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5.27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4. 5.30

4.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2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6.24)

- 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불안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노후 도시인프라 정비 및 문화시설 확충 등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음
-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자치구·교육청 및 타회계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도 반영하였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에서 1조 5,110억원이 증가한 47조 2,991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조 618억원에서 1조 1,434억원이 증가한 34조 2,052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조 7,263억원에서 3,676억원이 증가한 13조 939억원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4조 2,05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1,434억원(3.5%) 증가하였음
- 우선,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327억원을 증액하고,
- 세외수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결산에 따른 배당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576억원 증액하였음

- 그 외 정부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727억원 및 소방안전교부세 46억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662억원,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7억원이 증액되어,총 1조 1,434억원 순증하였음

〈 표 1 〉 2024년 일반회계 추경세입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4년 추경예산(안)	2024년 기정예산	증 감	비 율
총 규 모		342,052	330,618	11,434	3.5
자 체 수 입		257,068	256,492	576	0.0
시 세		242,353	242,353	0	0.0
세 외 수 입		14,715	14,139	576	4.0
	경상적 세외수입	8,635	8,155	480	5.9
	임시적 세외수입	5,998	5,902	96	1.6
	지 방 행 정 제 재 · 부 과 금	82	82	0	0.0
지 방 교 부 세		1,432	1,386	46	3.3
국 고 보 조 금		70,679	69,952	727	1.0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12,874	2,788	10,086	361.8
	순 세 계 잉 여 금	9,327	0	9,327	순 증
	기타 보전수입 등	1,036	374	662	177.0
	내 부 거 래	2,511	2,414	97	4.0

특별회계

-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조 93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6억원(2.9%)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78억원,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551억원, 공유재산임대료 등 추가 세원 발굴에 따른 세외수입 886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억원,소방안전교부세 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정부 확정내시 감소로 인해 국고보조금 973억원은 감액 반영하였음
- 세입·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1,456억원 증액하고,예수금 수입은 134억원 감액하였음

〈 표 2 〉 2024년 특별회계 추정세입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4년 추경예산(안)	2024년 기정예산	증 감	비 율
총 규 모		130,939	127,263	3,676	2.9
세 외 수 입		31,414	30,528	886	2.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4,397	23,607	790	3.3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564	1,564	0	0.0
	지 방 행 정 제 재 금 · 부 과	5,453	5,357	96	1.8
국 고 보 조 금		16,575	17,548	△ 973	△ 5.5
지 방 교 부 세		81	29	52	179.3
지 방 채		16,908	16,908	0	0.0
순 세 계 잉 여 금		6,365	4,687	1,678	35.8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41	81	160	197.5
전 입 금		45,801	43,794	2,007	4.6
	법 정 전 입	19,144	18,593	551	3.0
	일 반 전 입	26,657	25,201	1,456	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수 금 수 입 등		13,554	13,688	△ 134	△ 1.0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의 중점 투자계획과 주요 세출사업의 경우, 첫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682억원을 편성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음
-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에 1,051억원을 편성함
- 기후동행카드 및 손목닥터 9988 확대 공급, 저출생 위기극복 및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지원 등에 1,157억원을 투입함
- 장애인·어르신 및 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경감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1,474억원을 투자함
- 둘째, 안전 및 매력 분야에 1,910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음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전동차 증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 불량 하수맨홀 정비 등 안전 분야에 1,137억원을 투자했음
- 도시공간 혁신, 문화공간 및 시설확충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773억원을 투입함

- 의무경비 등의 편성내역의 경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차구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2,289억원,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3,635억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943억원도 반영하였음
- 그 외 공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국비감액 등으로 2,019억원을 감추경하여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¹⁾

- 관련 법령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 규칙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조 7,880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을 증액한 47조 2,990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3-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①=②+③	당초예산 ②	간주처리 ③			
	①=②+③	②	③	④	⑤=④-①	⑤/①
총 계 규 모	45,788,052	45,740,517	47,534	47,299,083	1,511,031	3.3
일 반 회 계	33,061,762	33,049,200	12,561	34,205,240	1,143,478	3.5
특 별 회 계	12,726,290	12,691,316	34,973	13,093,843	367,553	2.9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1,43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①'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9,326억 7,6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요청하고, ②세외수입 576억 2,2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③지방교부세 45억 6,2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④국고보조금등은 726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3,67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①'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에 대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920억 2,2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366억 9,8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0억 9,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이며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세계잉여금 2,007억 4,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이입하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1,400만원, 소방특별회계 27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입하고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376억 4,400만원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또한 △51억 3,400만원을 감액하며, 주택사업특별회계 △838억 7,2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49억 5,4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 그 외에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②세외수입 885억 4,100만원, ③지방교부세 52억원을 증액요청하고, ④국고보조금등은 △972억 7,7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표 3-2〉 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47,299,083	100.0	45,788,052	100.0	1,511,031	3.3
	지 방 세 수 입	24,235,274	51.2	24,235,274	52.9	-	-
	세 외 수 입	4,612,872	9.8	4,466,709	9.8	146,163	3.3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303,133	7.0	3,176,113	6.9	127,019	4.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756,186	1.6	746,608	1.6	9,577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3,552	1.2	543,986	1.2	9,565	1.8
	지 방 교 부 세	151,308	0.3	141,546	0.3	9,762	6.9
	보 조 금	8,725,361	18.4	8,749,957	19.1	△24,596	△0.3
	국 고 보 조 금 등	8,725,361	18.4	8,749,957	19.1	△24,596	△0.3
	시·도 비 보 조 금 등	-	-	-	-	-	-
	지 방 채	1,690,765	3.6	1,690,765	3.7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83,501	16.7	6,503,799	14.2	1,379,702	21.2
	보 전 수 입 등	1,715,928	3.6	533,230	1.2	1,182,698	221.8
	내 부 거 래	6,167,572	13.0	5,970,568	13.0	197,003	3.3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5조 7,880억 5,200만원)보다 3.3%, 1조 5,110억 3,1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1조 1,43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3,083억 2,700만원을 순증 편성하고, '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을 위해 **조정교부금**은 938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477억 900만원 증액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세 전출**은 834억 1,000만원, **담배소비세 전출** 65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나, **지방교육세 전출**의 경우, △26억 9,9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을 포함하여 37개 실·국·본부의 352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의 168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3,675억 5,3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표 3-3〉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총 계	47,299,083	100.0	45,788,052	100.0	1,511,031	3.3
일반공공행정	8,315,540	17.6	7,935,713	17.3	379,827	4.8
공공질서및안전	1,510,260	3.2	1,487,489	3.3	22,770	1.5
교육	4,284,554	9.1	4,197,308	9.2	87,246	2.1
문화및관광	996,634	2.1	977,906	2.1	18,727	1.9
환경	2,597,619	5.5	2,422,155	5.3	175,463	7.2
사회복지	17,413,826	36.8	17,413,271	38.0	554,869	0.0
보건	695,836	1.5	621,903	1.4	73,932	11.9
농림해양수산	54,595	0.1	51,357	0.1	3,237	6.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68,396	1.2	535,409	1.2	32,987	6.2
교통및물류	5,898,453	12.5	5,338,169	11.7	560,283	10.5
국토및지역개발	2,613,251	5.5	2,500,572	5.5	112,679	4.5
과학기술	7,307	0.0	7,307	0.0	-	-
예비비	118,643	0.3	106,483	0.2	12,159	11.4
기타	2,224,163	4.7	2,193,003	4.8	31,160	1.4

3. 세입예산 관련 검토

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지난해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는 지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326억 7,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요청 하였음
- 관련 법령은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관련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은 세입예산중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 편성요청하였음
 -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편성요청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에 대해 세출예산중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1,736억 5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872억 8,100만원), ③타 회계전출(551억 3,400만원) 등 이른바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④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3,083억 2,700만원) 하고자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경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 감	추경 (안)	주 요 증 감 내 역	
잉 여 금		0	932,676	932,676	세 계 잉 여 금	932,676
	순 세 계 잉 여 금	0	616,655	616,655	순 세 계 잉 여 금	616,655
	법 정 잉 여 금	0	316,021	316,021	법 정 의 무 경 비 소 계	316,021
					조 정 교 부 금 교 부	93,897
					재 정 보 전 금 교 부	47,709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31,998
					교 육 청 전 출	87,281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38,593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20%)	11,026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5,5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 정 안 정 화 계 정)	308,327

2)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조 4,138억 7,100만원)보다 576억 2,2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①**경상적세외수입**(480억 3,800만원), ②**임시적세외수입**(95억 7,700만원), ③**지방행정제재·부과금**(59억 7,200만원)에 대해 증액요청한 것임
- ①**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1,838억 9,1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 감액하고 **사업수입**은 SH공사 '23년도 이익잉여금과 관련하여 48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당초(1,151억 8,0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②**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기정예산(1,437억 4,200만원)보다 72억 1,900만원 증액 요청하고, **보조금반환수입**은 기정예산(2,482억 3,8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정예산(1,542억 3,800만원)보다 23억 4,500만원 증액요청한 것임
- ③**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부지 무단 점유로 발생된 변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3)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1,386억 600만원)보다 45억 6,2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45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인 바,

〈표 3-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교부세 편성요청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지 방 교 부 세		138,606	4,562	143,168
① 보 통 교 부 세		103,604	0	103,604
② 특 별 교 부 세		2,498	0	2,498
④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2,504	4,562	37,066

- 당초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예상금액 사전통지에 따라 본예산에 325억 4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24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23년 12월 29일 112억 6,200만원 증액한 437억 6,600만원으로 통보하였음
-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안에는 일반회계중 소방안전교부세 기정예산(325억 400만원)보다 45억 6,200만원이 증액된 370억 6,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회계연도중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교부될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바,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소방안전교부세 52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내역 통지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	'24년도 소 방 안 전 교 부 세 시·도별 교부액 통보 ('23.12.29)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	증 · 감 ㉢=㉡-㉠
32,504	43,766	37,066	4,562

4)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511)의 경우, 기정예산(6조 9,952억 600만원)보다 1.0%, 726억 7,900만원 증액된 7조 678억 8,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국고보조금**(511-01)은 기정예산(6조 6,322억 6,600만원)보다 630억 5,600만원 증액된 6조 6,953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내시 등에 따라 세출예산중 **자활근로사업 지원**(179억 5,400만원), **영유아보육료**(139억 9,800만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85억 500만원)등 40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고자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하고,
 -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26억 1,30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13억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10억 4,900만원)등 11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은 기정예산(839억 7,900만원)보다 31억 900만원 증액된 870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요청한 바,
 -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16억원),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12억 6,800만원), **직업교육훈련**(12억 800만원)등 3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요청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6억 1,300만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2억 1,300만원)등 4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금**(511-03)은 21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기정예산(2,789억 6,000만원)보다 2.3%, 65억 1,400만원이 증액된 2,854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고 보 조 금 등	6,995,206	72,679	7,067,886		
국 고 보 조 금	6,632,266	63,056	6,695,323	○ 자활근로사업 지원	17,954
				○ 영유아보육료	13,998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8,505
				○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6,200
				○ 부모급여 지원	4,428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862
				○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2,770
				○ 중증장애인연금	2,642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882
				○ 마음투자 지원사업	1,086
				○ 교사겸직원장	871
				○ 전통사찰 보수정비	667
				○ 긴급복지지원사업	663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은평구)	632
				○ 장애인의료비 지원	528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487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	426
				○ 급식위생관리지원금	385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368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27
				○ 지역자활센터 운영	297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273
				○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200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160
				○ 결핵진단검사 국고보조사업	160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50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143
				○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	128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8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69
				○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43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0

〈표 3-7B〉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6,995,206	72,679	7,067,886		
국고보조금	6,632,266	63,056	6,695,323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28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6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2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1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3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1 ○ 농업법인 육성지원 10 ○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7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0.5 ○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 △10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33 ○ 비료가격 안정지원 △77 ○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150 ○ 국고보조금 △305 ○ 한양도성 보수·정비 △348 ○ 장애수당-기초 △626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1,049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300 ○ 난치질환센터 내 자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2,6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979	3,109	87,088	○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1,600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268 ○ 직업교육훈련 1,208 ○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31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09 ○ 새일센터 운영지원 △213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13	
기금	278,960	6,514	285,474	○ 응급의료기관 지원 2,353 ○ 소아의료체계 구축(국비) 835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69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다문화가족) 746 ○ 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489 ○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305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259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36 ○ 결핵관리-보건소결핵관리(국비) 177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119	

〈표 3-7C〉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고 보조금등	6,995,206	72,679	7,067,886		
기 금	278,960	6,514	285,474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14 ◦ 학교밖 청소년 지원 93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42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37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22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19 ◦ 서북병원 결핵관리사업(국비) 1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7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16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운영지원(보조) 6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5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채용 지원 5 ◦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국비) 5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 △12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운영 △75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95	

5)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 등의 사유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기정예산(2,414억 200만원)보다 4.0%, 97억 3,3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8〉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세 외 수 입	1,413,871	57,622	1,471,493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15,426	48,038	863,465	◦재산임대수입 △174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등 △174 ◦사업수입 48,000 ·SH공사 23년도 이익잉여금 48,000 ◦이자수입 21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212 - 보조금 발생이자
임 시 적 세 외 수 입	590,232	9,577	599,809	◦재산매각수입 7,219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7,194 ·미야배수지 매각 수입금 24 ◦보조금반환수입 12 ·23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위탁비 정산반환수입 12 ◦기타수입 2,345 ·한강경찰대 순찰정 구입 납품 58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공공보건의료재단 잔여재산 반환 2,28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12	5	8,218	◦변상금 5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 5
지 방 교 부 세	138,606	4,562	143,168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2,504	4,562	37,066	◦소방안전교부세 4,562
보 조 금	6,995,206	72,679	7,067,886	
국 고 보 조 금 등	6,995,206	72,679	7,067,886	◦국고보조금 63,0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09 ◦기금 6,5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8,803	1,008,613	1,287,417	
보전수입등	37,400	998,880	1,036,280	◦순세계잉여금 932,676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6,203
내부거래	241,402	9,733	251,136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733 ·누리과정보육료 9,733

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2조 7,262억 9,000만원)보다 2.9%, 3,675억 5,300만원 증액된 13조 938억 4,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9A〉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	12,726,290	367,553	13,093,843	
공기업특별회계	1,821,823	92,022	1,913,845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	-	97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51,823	92,022	943,845	◦순세계잉여금 92,022
기타특별회계	10,904,466	275,531	11,179,99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57,777	61,091	2,118,869	◦국고보조금 3,998 ◦순세계잉여금 36,698 ◦기타회계전입금 95,995 ◦예수금수입 △75,600
교통사업특별회계	1,545,735	175,936	1,721,671	◦도로사용료 △6,932 ◦부담금 9,560 ◦국고보조금 3,939 ◦순세계잉여금 △37,64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 ◦기타회계전입금 190,012 ◦예수금수입 17,000

〈표 3-9B〉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23,450	341	223,792	◦순세계잉여금 △5,13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976 ◦예수금수입 △500
주택사업 특별회계	2,254,090	146,782	2,400,873	◦공유재산임대료 85,914 ◦국고보조금 6,985 ◦기금 41,038 ◦순세계잉여금 △83,87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756 ◦기타회계전입금 40,260 ◦예수금수입 45,700
도시개발 특별회계	1,678,731	3,968	1,682,700	◦국고보조금 4,5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00 ◦기금 3,339 ◦순세계잉여금 △44,95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26 ◦기타회계전입금 38,593
균형발전 특별회계	178,751	△2,390	176,360	◦순세계잉여금 6,09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0 ◦기타회계전입금 △8,414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8,658	936	9,594	◦순세계잉여금 93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15,163	△125,534	1,789,628	◦국고보조금 △163,139 ◦순세계잉여금 200,743 ◦기타회계전입금 △163,139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2,458	△587	31,871	◦순세계잉여금 11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27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25
소방 특별회계	1,009,649	14,987	1,024,636	◦소방안전교부세 5,200 ◦순세계잉여금 2,75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0 ◦기타회계전입금 7,235

1)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인 바,
 - 특별회계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 920억 2,2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경우,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회계가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 요청한 것으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2,007억 4,3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1억 1,400만원), **소방특별회계**(27억 5,2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이나,
 - **교통사업특별회계**(△376억 4,4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51억 3,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838억 7,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449억 5,4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바,

〈표 3-10〉 순세계잉여금 경정 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 2 4 년 도 본 기 반 영 산 액 ①	' 2 3 회 계 연 도 결 산 결 과 순 세 계 잉 여 금 ②	추 경 증 · 청 요 액 ③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08,305	70,661	△37,64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35	△213	△5,135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99,553	115,680	△83,873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6,321	31,367	△44,95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31	205,874	200,74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70	284	114
소 방 특 별 회 계	28,024	30,776	2,752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46,093	123,134	0

- '24년도 본예산에 세계잉여금을 미리 편성하여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76억 4,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38억 7,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49억 5,4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51억 3,5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이나,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오히려 △2억 1,300만원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 '24년도중 추경으로 타 회계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전출 등을 통해 본예산에 이른바 '가불하여' 편성한 51억 3,500만원 뿐만 아니라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2억 1,200만원까지 추가 편성(53억

4,700만원)하거나, 실제없이 장부상 허수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51억 3,500만원)과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2억 1,200만원)까지 모두 포함한 △53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용재원인바,

- 서울시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해당 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전년도 11월에 미리 다음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재정 여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고 있음에도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8개 특별회계에서 '24년도 세입예산안에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5개 특별회계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증·감편성을 요청한 바,
 -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에 국비 26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3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1,467억 7,400만원)보다 39억 9,8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②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에 국비 31억 8,900만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에 국비 5억 5,000만원,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에 국비 2억원이 증액되어 39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③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에 국비 69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20억원)보다 69억 8,500만원 증액 편성요청(89억 8,500만원)한 것임
 - ④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에 국비 30억원,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에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1억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1,266억 1,000만원)보다 45억 6,3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에 국비 △1,631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을 경정 요청한 것임

〈표 3-1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 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46,774	3,998	150,772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2,650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348
② 교통사업 특별회계	56,048	3,939	59,987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 3,189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550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200
③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0	6,985	8,98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6,985
④ 도시개발 특별회계	126,610	4,563	131,173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3,000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 1,680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16
⑤ 의료급여기 특별회계	952,715	△163,139	789,576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63,139

○ 세입항목인 국고보조금등에 포함되는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20억원이 추가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352억 1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201	2,000	37,201	◦암사역사공원 조성 2,000

-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기금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중 SH선매입은 468억 8,200만원 증액통보되고, **추가8만호(청석주차장,한누리주차장)**는 △9억 4,900만원, **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면목행정중심복합타운)**은 △48억 9,300만원이 감액통보 됨에 따라 410억 3,8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중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품과 기능 확대 지원**은 2억 3,100만원, **가공배전선 지중화**는 31억 800만원이 증액통보 됨에 따라 33억 3,9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3〉 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주택사업특별회계	기금	329,477	41,038	370,515	◦추가8만호(청석주차장,한누리주차장) △949
					◦SH선매입 46,882
					◦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면목행정중심복합타운) △4,893
도시개발특별회계	기금	6,100	3,339	9,439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과 기능 확대 지원 231
					◦가공배전선 지중화 3,108

3)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개 특별회계가 세외수입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을 기정예산(5,551억 7,400만원)보다 26억 2,7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69억 3,200만원)를 감액조정 요청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 부담금(95억 6,0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대해 기정예산(6,793억 8,700만원)보다 859억 1,400만원 증액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859억 1,400만원)를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4〉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교 특	통 별	사 회	업 계	555,174	2,627	557,801	◦도로사용료 △6,932 ·혼잡통행료(교통관리계정) △6,932 ◦부담금 9,560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LH 부담금 5,000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LH 부담금 4,560
							◦공유재산임대료 85,914 ·둔촌주공 임차보증금 수입
주 특	택 별	사 회	업 계	679,387	85,914	765,301	

4) 지방채에 대한 세입경정

-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금번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발행규모 총액에 대한 변동없이 2개 세부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를 각각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 ①**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은 지방공공자금채를 당초 1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40억원 감액발행 요청하고,
- ②**양재대로 구조개선**은 지방공공자금채를 당초 20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40억원 추가발행 요청한 것임

〈표 3-15〉 지방채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도 본예산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
① 지방공공자금채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10,000	6,000	△4,000
② 지방공공자금채 (양재대로 구조개선)	20,000	24,000	4,000

5)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세입경정

-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5조 6,748억 9,400만원)보다 1,872억 6,700만원 증·감하여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규모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표 3-16〉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계		5,674,894	187,267	5,862,164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내부거래	729,646	20,395	750,041	◦기타회계전입금 95,995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95,995 ◦예수금수입 △75,6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75,600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825,904	207,012	1,032,917	◦기타회계전입금 190,021 ·일반회계 일반전입금(교통관리계정) 184,499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5,513 (23년 결산, 주차장관리계정) ◦예수금수입 17,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7,000 (교통관리계정)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내부거래	113,800	△500	113,300	◦예수금수입 △5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00
주택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701,769	85,960	787,729	◦기타회계전입금 40,260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29,233 ·법정전입금(23년결산, 도정계정) 5,513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23년결산, 재촉계정) 5,513 ◦예수금수입 45,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700
도시개발 특별회계	내부거래	1,303,197	38,593	1,341,791	◦기타회계전입금 38,593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23년 결산) 38,593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부거래	76,112	△8,414	67,697	◦기타회계전입금 △8,414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8,41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부거래	952,715	△163,139	789,576	◦기타회계전입금 △163,139 ·의료급여사업 시비 분담금 △163,139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내부거래	1,261	125	1,387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25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25
소방방재 특별회계	내부거래	970,490	7,235	977,726	◦기타회계전입금 7,235 ·소방안전교부세 일반수요 (소방정책사업비계정) 3,421 ·일반회계전입금(인건비계정) 3,813

4. 세출예산 관련 검토

가. 추경예산안의 특징

- 지난 5월 27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가 운용 중인 회계(13개)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회계의 520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3-17〉 추경안을 통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세부사업 수

(단위 : 개)

구분	합계	증액조정이 요청된 사업수			감액조정이 요청된 사업수	기타 ^{주3)} 사업수
		소계	'24년도 예산 신규편성 ^{주1)}	그 밖의 증액편성 ^{주2)}		
합계	520	436	108	328	80	4
정책사업 ^{주4)} 에 대한 증감요청	402	331	63	268	67	4
시비만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업	297	251	53 ①	198 ②	46 ③	-
국비 교부규모 변경으로 인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업						
소계	105 ④	80	10	70	21	4
국고보조금등 변경 ^{주5)}	100	79	10	69	21	-
소방안전교부세 변경 ^{주6)}	5	1	-	1	-	4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증감요청	23 ⑤	17	-	17	6	-
재무활동에 대한 증감요청	84 ⑥	78	45	33	6	-
예비비에 대한 증감요청	11 ⑦	10	-	10	1	-

※ 주1) 기정예산이 0인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을 통해 '24년도 예산이 신규편성 요청된 것임

주2) 기정예산이 존재하나, 금번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이 요청된 것임

주3)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액의 총규모는 동일하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증액조정 요청하고 그 만큼 시비를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주4)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주5)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511-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기금(511-03) 포함]의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조정이 요청된 것임

주6) 지방교부세(311) 중 소방안전교부세 (311-04)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조정이 요청된 것임

- 이 중 297개 세부사업은 시비만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① 53개 세부사업은 **시비를 신규편성** 요청하고, ② 198개 세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③ 46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사업추진 지연, 사업범위 축소 등을 사유로 **시비에 대해 감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④ 시의회가 본예산을 의결('23.12.15)한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23.12.21)되어 확정·변경내시 등이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규모가 변경**된 바, 105개 세부사업은 국비 또는 국·시비를 증·감조정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그 밖에도 ⑤ 회계연도 개시 후의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변경 등을 사유로 **행정운영경비** 중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하였으며, ⑥ '23회계연도 결산결과와 국고보조금 반환규모 등을 반영하여 **재무활동** 중 84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하고, ⑦ 각 회계의 재정운영규모 변동과 연동하여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경정**하기 위해 11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관련 법령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칙의 경우에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③ 회계연도 중 사업의 실제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감추경을 요청한 사안(46개 세부사업)과 ④ 국비 교부규모가 변경되어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안(105개 세부사업) 그리고 ⑤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변경, ⑥ 직전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⑦ 재정운영규모 변동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안(총 118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고 있는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됨

- 다만, 시비를 ① 신규편성 요청한 53개 세부사업과 ②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198개 세부사업중 일부 사업의 경우, 첫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관련 규칙에 따라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둘째, 편성요청한 사업내용이 지난 5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중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추경을 단행”하는 것에 부합되는지 사업부서 차원에서도 재고(再考)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시의회가 삭감한 경비에 대해 복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소요예산이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8〉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경비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사결과			추경안 편성현황		
		예산안	감액	예산서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경제정책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16,127	△15,467	660	660	5,558	6,218
		○ 서울영화센터 공사비(△98억 2,700만원)와 감리비(△4억 8,500만원)를 포함한 △154억 6,700만원 삭감			○ 서울영화센터 건립공사에 필요한 시설비(52억 5,900만원)와 감리비(2억 9,600만원)를 포함한 55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		
복지정책실	노인지원주택 운영	793	△400	393	393	189	583
		○ 노인지원주택 운영비 △4억원 삭감			○ 노인지원주택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1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		
도시교통실	시내 버스 서비스 개선	340,010	△10,000	330,010	330,010	70,000	400,010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0억원 삭감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00억원 증액편성 요청		
평생교육국	시립 청소년 센터 위탁 운영 지원	28,911	△142	28,768	28,768	1,765	30,534
		○ 시립목동청소년센터(△6,000만원)와 시립창동청소년센터(△1억 1,800만원), 그리고 18개 청소년센터(△9억 3,200만원)의 감면 손실보전금을 감액하고, 기타 내역에 대해 증감조정함으로써 총 △1억 4,200만원을 삭감			○ 사용료 감면 손실보전금 17억 6,5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디자인정책관	편 디자인 시설물 개발	1,755	△300	1,455	1,455	300	1,755
		○ 신규 편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내역에 대해 증감조정함으로써 총 △3억원을 삭감			○ 신규 편 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시설비 2억 7,600만원을 포함한 3억원 증액편성 요청		
미래한강본부	로 맨 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350	△350	-	-	450	450
		○ 행사운영비(3억 4,800만원)를 포함한 소요예산(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 행사운영비(4억 4,800만원)를 포함한 4억 5,000만원 신규편성 요청		
물순환안전국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324	△1,000	8,324	8,324	5,000	13,324
		○ 공사비 10억원 삭감			○ 공사비 부족분(50억원) 증액편성 요청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6,280	△4,000	2,280	2,280	11,780	14,060
		○ 당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비(13억원)와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비(15억원) 중 △18억원 삭감 ○ 탄천우안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21억 8,000만원)과 목감천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13억원) 중 △22억원 삭감			○ 당현천 성능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48억원)와 불광천 성능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20억원) 증액편성 요청 ○ 탄천우안 성능개선 공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억 8,0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물순환안전국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58,344	△1,800	56,544	56,544	5,700	62,244
		○ 공공운영비 △18억원 삭감			○ 공공운영비 57억원 증액편성 요청		

- 관련 법령등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법정잉여금)과 이월예산을 차감한 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의 경우,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13개) 중 12개 회계에 대해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이입하기 위해 세입예산을 경정요청한 것임
 - 그러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231억 3,400만원 발생되었으나, 금번 추경안을 통해 본예산에 기 편성된 규모(460억 9,300만원)를 경정요청하지 않아 770억 4,1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되지 않은 바,
 - '24년도 중 별도의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770억 4,100만원은 '24년도 세입이 아닌 '25년도 세입으로 이입하게 되어 관련법령 위반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9〉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이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이입(편성) 현황			세입예산에 이입(편성)되지 않은 잔액
		본예산	증감	추경안	
일 반 회 계	932,677	-	932,677	932,677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36,698	-	36,698	36,698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70,661	108,305	△37,644	70,661	-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213	5,135	△5,135	-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15,680	199,553	△83,873	115,680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1,367	76,321	△44,954	31,367	-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205,874	5,131	200,743	205,874	-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84	170	114	284	-
소 특 별 회 방 계	30,776	28,024	2,752	30,776	-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6,094	-	6,094	6,094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937	-	937	937	-
수 도 사 업 ^{주1)} 특 별 회 계	123,134	46,093	-	46,093	77,041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92,022	-	92,022	92,022	-

※ 주1) 금번 추경안을 통해 증·감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회계임

〈표 3-20A〉 시비만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2억원 이상 신규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시 민 건 강 국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8,047	8,047
재난안전관리실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	5,100	5,100
도 시 교 통 실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	4,560	4,560
복 지 정 책 실	어 르 신 일 자 리 활 성 화	-	3,836	3,836
미래공간기획관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	-	3,800	3,800
물 순 환 안 전 국	노 후 불 량 하 수 관 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00	2,00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골 목 상 권 특 화 지 원 사 업	-	1,800	1,800
재난안전관리실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줄임싹터 설치	-	1,500	1,500
재난안전관리실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	1,300	1,300
푸른도시여가국	주 요 공 원 접 근 로 개 선	-	1,078	1,078
물 순 환 안 전 국	거여동 2-7 주변 외 2개소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	1,050	1,050
푸른도시여가국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1,010	1,010
푸른도시여가국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	1,000	1,000
물 순 환 안 전 국	일원로 3길 87 외 2개소 하 수 관 로 개 량 공 사	-	1,000	1,000
물 순 환 안 전 국	도산대로 68길 10 외 5개소 하 수 관 로 개 량 공 사	-	900	900
물 순 환 안 전 국	대 사 관 로 70 주 변 하 수 관 로 개 량 공 사	-	860	860
물 순 환 안 전 국	올림픽로43길 하수관로 정비공사	-	815	815
물 순 환 안 전 국	방이동 먹자골목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	-	723	723
물 순 환 안 전 국	노일중학교 일대 침수 저감 사업	-	677	677
물 순 환 안 전 국	성수1가 160-1 주변외 3개소 하 수 관 로 개 량	-	600	600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3-21B〉 시비만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2억원 이상 신규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물 순환 안전국	동작구 관내 침수취약지역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	559	559
물 순환 안전국	잠실대교 남단 하수관로 정비공사	-	452	452
미래한강본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	450	450
미래공간기획관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	-	400	400
물 순환 안전국	종암로 87-6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	400	400
물 순환 안전국	남부지방검찰청 주변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공사	-	371	371
미래공간기획관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	-	300	300
미래공간기획관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300	300
주택정책실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보전	-	300	300
문화본부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	-	290	290
도시공간본부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	250	250
물 순환 안전국	사당역 6번 출구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	-	250	250
물 순환 안전국	삼성로 75길 26-7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	240	240
주택정책실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229	229
시민건강국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225	225
미래공간기획관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추진	-	220	220
물 순환 안전국	고덕동 562-2 외 6개소 하수박스 작업구 신설	-	210	210
도시공간본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	200	200
푸른도시여가국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	-	200	200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3-22A〉 시비만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2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행 정 국	조 정 교 부 금	4,171,745	93,897	4,265,642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1,757,043	83,410	1,840,453
도 시 교 통 실	시 내 버 스 서 비 스 개 선	330,010	70,000	400,010
도 시 교 통 실	기 후 동 행 카 드 운 영	40,100	69,684	109,784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719,754	47,709	1,767,463
시 민 건 강 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6,283	22,642	38,925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x40,558) 76,556	(x-) 20,634	(x40,558) 97,190
도 시 교 통 실	우 이 신 설 경 전 철 재 정 지 원	40,858	15,129	55,988
물 순 환 안 전 국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10,000	14,700	24,700
물 순 환 안 전 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8,154	14,073	212,227
재난안전관리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000	13,690	53,690
물 순 환 안 전 국	차 집 관 로 성 능 개 선	2,280	11,780	14,06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 울 신 용 보 증 재 단 출 연	22,800	11,375	34,175
시 민 건 강 국	서 울 형 헬 스 케 어 운 영	13,777	11,305	25,083
시 민 건 강 국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3,909	11,200	25,109
여성가족정책실	누 리 과 정 보 육 료 지 원	185,344	9,733	195,078
재난안전관리실	월 드 컵 대 교 건 설	16,000	9,657	25,657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버 스 요 금 지 원	24,280	9,421	33,701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57,277	6,570	263,847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뿐만 아니라 신규편성 요청된 사업도 제외한 것임

〈표 3-22B〉 시비만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2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주 택 정 책 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29,393	6,369	35,762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량 물 재 생 센 터 운 영	56,544	5,700	62,244
노동공정상생장책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2,885	5,665	8,550
경 제 정 책 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660	5,558	6,218
재난안전관리실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5,020	5,360	10,380
물 순 환 안 전 국	노 후 불 량 하 수 맨 홀 정 비	(x1,000) 7,400	(x-) 5,000	(x1,000) 12,400
물 순 환 안 전 국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324	5,000	13,324
미 래 한 강 본 부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314	4,841	7,155
도 시 교 통 실	신림선 경전철 재정 지원	12,888	4,171	17,060
균 형 발 전 본 부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5,844	4,142	9,986
문 화 본 부	서 서 울 미 술 관 건 립	13,141	4,125	17,266
도 시 교 통 실	장 애 인 바 우 처 택 시 운 영	12,614	3,610	16,224
여성가족정책실	아 동 급 식 지 원	29,814	3,359	33,174
도 시 교 통 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전환사업)	20,173	2,900	23,073
미 래 한 강 본 부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1,145	2,700	3,845
미 래 한 강 본 부	암 사 초 록 길 조 성	1,500	2,600	4,100
기 후 환 경 본 부	에 코 마 일 리 지 인 센 티 브	(x300) 5,396	(x-) 2,500	(x300) 7,896
경 제 정 책 실	도 시 제 조 업 작 업 환 경 개 선	4,520	2,175	6,695
도 시 교 통 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x6,981) 31,162	(x-) 2,172	(x6,981) 33,334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뿐만 아니라 신규편성 요청된 사업도 제외한 것임

〈표 3-23〉 시비만 감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감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대중교통요금지원	6,715	△6,692	22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6,484	△6,484	-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6,111	△5,641	470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5,400	△5,400	-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5,300	△5,300	-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6,145	△4,527	1,617
재난안전관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12,109	△4,000	8,109
재난안전관리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x3,500) 7,000	(x-) △3,500	(x3,500) 3,500
평생교육국	지방교육세전출	1,811,356	△2,699	1,808,656
문화본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14,241	△2,520	11,721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3,778	△2,400	1,378
재난안전관리실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3,000	△1,800	1,200
도시교통실	혼잡통행료징수위탁관리	6,889	△1,231	5,657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1,945	△1,200	745
재난안전관리실	남부도로사업소청사이전	1,900	△1,100	800
재난안전관리실	성동교확장	1,000	△1,000	-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3-24A〉 국비 규모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주 택 정 책 실	청 년 안 심 주 택 S H 선 매 입	(x11,580) 16,541	(x46,882) 68,026	(x58,462) 84,567
"	청 년 월 세 한 시 특 별 지 원	(x2,000) 2,000	(x6,985) 27,950	(x8,985) 29,950
복 지 정 책 실	자 활 근 로 사 업 지 원	(x81,243) 119,157	(x17,954) 26,333	(x99,198) 145,491
여성가족정책실	영 유 아 보 육 료 지 원	(x249,488) 463,245	(x13,998) 25,975	(x263,486) 489,220
기 후 환 경 본 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 출 가 스 저 감	(x12,767) 25,422	(x8,505) 16,960	(x21,272) 42,38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x308,175) 618,377	(x6,200) 10,552	(x314,375) 628,929
도 시 교 통 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사업	(x30,871) 70,553	(x3,189) 10,339	(x34,060) 80,892
"	9 호 선 전 동 차 증 차 지 원	(x1,473) 1,473	(x1,348) 9,810	(x2,821) 11,283
여성가족정책실	부 모 급 여 지 원	(x309,992) 575,207	(x4,428) 8,216	(x314,420) 583,423
도 시 교 통 실	4·7 호 선 전 동 차 증 차 지 원	(x936) 936	(x2,650) 8,030	(x3,586) 8,966
재난안전관리실	가 공 배 전 선 지 중 화	(x-) 4,331	(x3,108) 6,337	(x3,108) 10,66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x7,722) 12,910	(x2,770) 4,672	(x10,493) 17,583
문 화 본 부	풍 납 토 성 복 원 (토 지 보 상)	(x92,118) 131,597	(x3,255) 4,650	(x95,373) 136,248
복 지 정 책 실	중 증 장 애 인 연 금	(x96,116) 162,438	(x2,642) 4,459	(x98,758) 166,897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x12,296) 24,593	(x1,882) 3,764	(x14,179) 28,358
문 화 본 부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보 수 정 비	(x19,499) 28,733	(x2,862) 3,628	(x22,362) 32,362
시 민 건 강 국	공 공 병 원 경 영 혁 신 지 원	(x-) -	(x1,600) 3,200	(x1,600) 3,200

※ 국비(국고보조금등과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① 10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한 사업과 ②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3-24B〉 국비 규모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복 지 정 책 실	어 르 신 복 지 시 설 기 능 보 강	(x739) 1,742	(x1,268) 2,641	(x2,008) 4,384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x2,837) 9,459	(x746) 2,488	(x3,584) 11,948
문 화 본 부	풍 납 토 성 복 원 (보 수 · 정 비)	(x5,600) 8,000	(x1,680) 2,400	(x7,280) 10,40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x19,073) 105,166	(x871) 2,293	(x19,944) 107,460
시 민 건 강 국	응 급 의 료 기 관 지 원	(x4,114) 5,092	(x2,353) 2,147	(x6,468) 7,239
푸 른 도 시 여 가 국	암 사 역 사 공 원 조 성	(x2,000) 4,107	(x2,000) 2,000	(x4,000) 6,107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아 가 족 아 동 양 육 지 원	(x2,434) 8,046	(x487) 1,693	(x2,922) 9,740
시 민 건 강 국	소 아 의 료 체 계 구 축 (국 비)	(x-) -	(x835) 1,670	(x835) 1,670
〃	희 귀 질 환 자 의 료 비 지 원	(x2,411) 5,225	(x769) 1,666	(x3,180) 6,891
〃	마 음 투 자 지 원 사 업	(x4,658) 6,988	(x1,086) 1,630	(x5,745) 8,61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	(x-) -	(x426) 1,420	(x426) 1,420
도 시 교 통 실	디 지 털 물 류 서 비 스 실 증 지 원	(x800) 800	(x200) 1,200	(x1,000) 2,000
〃	자율주행 자동차 사범은행지구 조성 및 운영	(x-) 1,127	(x550) 1,105	(x550) 2,232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의 료 비 지 원	(x2,326) 4,653	(x528) 1,057	(x2,855) 5,71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어 린 이 집 운 영 지 원 (보 조)	(x1,094) 2,880	(x385) 1,015	(x1,479) 3,896
문 화 본 부	전통시찰 보수장비 지원전통시찰 보수 장비	(x1,741) 2,611	(x667) 1,001	(x2,408) 3,612

※ 국비(국고보조금등과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① 10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한 사업과 ②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3-25〉 국비 규모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억원 이상 감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복 지 정 책 실	의 료 급 여 사 업	(x952,715) 1,914,995	(x△163,139) △125,534	(x789,576) 1,789,460
주 택 정 책 실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x27,527) 27,527	(x△4,893) △4,893	(x22,633) 22,633
기 후 환 경 본 부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 기 물 처 리 시 설 건 립	(x2,613) 2,613	(x△2,613) △2,613	(x-) -
시 민 건 강 국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x1,162) 2,324	(x△1,049) △2,099	(x112) 225
복 지 정 책 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x56,927) 83,493	(x△1,300) △1,906	(x55,627) 81,586
”	장 애 수 당 - 기 초	(x18,812) 31,997	(x△626) △1,068	(x18,186) 30,928
주 택 정 책 실	공공주택 건설 (추가 8 만 호)	(x2,395) 3,211	(x△949) △949	(x1,445) 2,262
복 지 정 책 실	노 인 맞 춤 돌 봄 서 비 스	(x37,608) 56,579	(x△613) △911	(x36,995) 55,667
문 화 본 부	한 양 도 성 보 수 · 정 비	(x898) 1,283	(x△348) △498	(x549) 785
시 민 건 강 국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x150) 300	(x△150) △300	(x-) -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x1,921) 6,405	(x△75) △253	(x1,845) 6,15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x1,133) 1,619	(x△116) △167	(x1,016) 1,45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x95) 158	(x△95) △158	(x-)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 료 가 격 안 정 지 원	(x105) 175	(x△77) △128	(x27) 46
복 지 정 책 실	일 상 돌 봄 서 비 스 사 업	(x576) 868	(x△109) △116	(x466) 751

※ 국비(국고보조금등과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감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3-26〉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증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52,615	23,254	875,87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기본경비	386	12	39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293	8	301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기본경비	793	7	80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기본경비	600	6	606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130	5	135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기본경비	273	4	278
미래청년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기본경비	133	4	13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619	4	623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기본경비	223	4	227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	229	4	234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기본경비	1,459	2	1,461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기본경비	242	2	24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321	1	32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120	1	121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기본경비	1,543	-주1)	1,544
시립미술관 (총무과)	기본경비	2,145	-주1)	2,145

※ 행정운영경비가 증액편성 요청된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임

주1) 기정예산 대비 6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이나,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된 것임

〈표 3-27A〉 재무활동에 대한 증액편성 요청현황 (5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순세계잉여금)	-	308,327	308,327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60,174	184,499	244,67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	196,146	95,995	292,141
기 후 환 경 본 부 (친환경차량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46,490	46,118	92,608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축진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210,700	42,100	252,800
균 형 발 전 본 부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301,527	38,593	1,340,12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일 반 전 출 금 (국 민 계 정)	-	29,233	29,233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행정과)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16,900	19,700	36,600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	17,214	17,214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금 (주 차 장 관 리 계 정)	205,900	17,000	222,900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	15,278	15,279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행정과)	소 방 특 별 회 계 일 반 전 출 금	970,490	7,235	977,726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396,567	5,513	402,080
주 택 정 책 실 (주거정비과)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도 정 계 정)	185,932	5,513	191,445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축진사업과)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재 촉 계 정)	185,932	5,513	191,445

※ 재무활동에 대해 ① 5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하거나 ②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현황이 포함된 것임

〈표 3-27B〉 재무활동에 대한 증액편성 요청현황 (5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87	4,493	4,681
주 택 정 책 실 (주거정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523,000	4,000	527,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50	3,889	3,939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국고보조금 반납(도로계획과)	-	3,730	3,730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국 민)	152	3,385	3,537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332	2,704	3,036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국 고 보 조 금 반 환	-	2,207	2,207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	1,371	1,37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6	1,177	1,193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6,198	1,070	7,268
기 후 환 경 본 부 (친환경건물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060	975	2,035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6,300	900	7,200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	845	845
시 민 건 강 국 (정신건강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	817	817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이 자 상 환	609	551	1,161

※ 재무활동에 대해 ① 5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하거나 ②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현황이 포함된 것임

〈표 3-28〉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감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기 본 경 비	97	△10	86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기 본 경 비	74	△6	68
균 형 발 전 본 부 (균형발전정책과)	기 본 경 비	330	△2	327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기 본 경 비	39	△2	36
기 획 조 정 실 (기 획 담 당 관)	기 본 경 비	383	△2	38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기 본 경 비	331	△1	330

※ 행정운영경비가 감액편성 요청된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임

〈표 3-29〉 재무활동에 대한 감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복 지 정 책 실 (복 지 정 책 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952,715	△163,139	789,576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	348,300	△57,900	290,400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전 출	76,112	△8,414	67,697
물 순 환 안 전 국 (물 재 생 시 설 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000	△540	1,459
문 화 본 부 (문 화 재 관 리 과)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이자상환	(x881) 1,259	(x△255) △364	(x626) 89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2	-주1)	1

※ 재무활동이 감액편성 요청된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임

주1) 기정예산 대비 △70만 8,000원 감액편성을 요청한 것이나,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된 것임

〈표 3-30〉 예비비에 대한 증·감조정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회계)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기 획 조 정 실 (일 반 회 계)	예 비 비 (일 반 회 계)	100,550	11,171	111,721
기 획 조 정 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 비 비 (도 시 개 발)	5,055	878	5,934
기 획 조 정 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 비 비 (균 형 발 전)	877	110	987
소 방 재 난 본 부 (소 방 특 별 회 계)	예 비 비	1,705	57	1,763
도 시 교 통 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 비 비 (교 통 관 리 계 정)	762	729	1,492
도 시 교 통 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 비 비 (주 차 장 관 리 계 정)	704	14	719
도 시 교 통 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50	111	862
주 택 정 책 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34	36	71
주 택 정 책 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 비 비 (도 정)	884	73	958
주 택 정 책 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 비 비 (재 촉)	997	28	1,026
물 순 환 안 전 국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2	△46	275

※ 예비비에 대해 증·감조정이 요청된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임

나.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시가 제출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24년도 본 예산 심사시 의결('23년 12월 15일)된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제1조)과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를 수정요청한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를 연동하여 경정하려는 것임
- 예산총칙중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의 경우에는 당초 45조 7,405억 1,700만원을 47조 2,990억 8,3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45조 7,880억 5,200만원)보다 1조 5,110억 3,100만원 증액된 47조 2,990억 8,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총액도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추경안을 통해 기 편성된 세출사업의 규모를 경정함에 따라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도 경정요청한 바,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①일반예비비 805억 5,000만원과 ②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한 1,005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을 확정하였으나, ①일반예비비를 당초(805억 5,000만원)보다 111억 7,100만원 증액된 917억 2,1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표 3-31〉 예산총칙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본	예	산	증	감	액	제 1 회 추 경 안
일	반	회	계	예	비	비			
				100,550				11,171	111,721
①	일	반	예	비	비			11,171	91,721
				80,550					
②	목	적	예	비	비			-	20,000
				20,000					

- 예비비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편성한도가 없으나, 일반예비비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총칙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917억 2,100만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4조 2,052억 4,000만원)의 0.2%에 해당되어 관련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요청된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일반회계 예비비(1,117억 2,100만원)는 '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1,005억 5,000만원)보다 11.1%, 111억 7,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액(34조 2,052억 4,000만원)이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33조 617억 6,200만원) 대비 3.4%, 1조 1,434억 7,8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증액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혹서기 폭염, 가뭄, 그리고 동절기 한파 등으로 예비비 지출수요를 예측하는데 한계는 있으나 '23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1,250억원중 지출결정되지 않은 732억 80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례가 있는 바, 예비비 편성액은 다른 세출예산처럼 이용·전용·변경이 자유

롭지 않은 것은 물론 이월이 불가하여 과다편성은 불용으로 직결될 수 있어 준비재원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편성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제4조)의 경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세부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에서 발행계획한 지방공공 자금채 △40억원을 감액하고,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대한 지방공공 자금채를 40억원 추가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의 변동이 없어, 예산총칙 제4조는 별도의 경정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표 3-32〉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본 예 산	증 액	감 액	추경(안)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96,800	4,000	△4,000	96,800
정 자 금 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800	-	-	6,800
지방공공 자 금 채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10,000	-	△4,000	6,000
지방공공 자 금 채	양 재 대 로 구 조 개 선	20,000	4,000	-	24,000
지방공공 자 금 채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10,000	-	-	10,000
모집공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30,000	-	-	30,000
모집공채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20,000	-	-	20,000

다. 법정경비 등의 정산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 ① 지방세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정산금,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④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 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전출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산하고 있음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에 대해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1,416억 7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872억 8,100만원), ③타회계 전출(551억 3,400만원) 등을 포함한 법정 의무경비 2,840억 2,200만원을 정산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④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319억 9,800만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관련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9,326억 7,600만원에서 법정정산분(3,160억 2,100만원)을 차감한 가용재원은 6,166억 5,500만원으로 법정 의무경비 정산후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3,083억 2,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음
- 다만, 법정 의무경비(3,160억 2,100만원)중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319억 9,800만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 하지 않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3,083억 2,700만원)후 남게되는 여유재원
3,403억 2,6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
으로 검토됨

〈표 3-33〉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액	비고
계			932,676	
법 정 의 무 경 비 계			284,022	
	자 치 구 정 산 금	소 계	141,607	
		조 정 교 부 금	93,897	보통세 × 22.6% + 레저세 장외발매분 × 20%
		재 정 보 전 금	47,709	특별시분 재산세 × 100%
	교 육 청 전 출 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소 계	87,281	
		지 방 세 전 출	83,410	보통세(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 업원분, 재산세 제외) × 10.0%
		담배소비세전출	6,570	담배소비세의 45.0%
		지방교육세전출	△2,699	지방교육세의 100% ('23회계연도 정산분)
	타 회 계 전 출 (교육비특별회계전출 제외)	소 계	55,134	
		도시개발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38,593	'23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551억 3,400만원 중 7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주택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11,026	'23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551억 3,400만원 중 2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교통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5,513	'23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551억 3,400만원 중 1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308,327	순세계잉여금중 법정의무경비 정산후 잔액의 50.0%
여 유 재 원			340,326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 미편성에 따라 가용재원(319억 9,800만원) 증가

라.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여성가족정책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01)

- 동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구립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3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26
민 간 위 탁 금				130
		◦ 단일임금 인건비 부족분 32,031,000원*4개소 ◦ 시립시설 임차료 347,000원*6개월		128 2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96
		◦ 단일임금 인건비 부족분 32,224,000원*3개소		96

- 증액편성한 민간위탁금중 시립시설 임차료(200만원)를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시립시설 임차료(200만원)는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105)

- 동 사업은 공공 예식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결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민간위탁금(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3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55	
민		간		위		탁		금	
		◦ 결혼식 사업 총괄 인건비 13,800,000원×1명						13	
		◦ 비품업체 선정 및 회의비 1,600,000원×2회						3	
		◦ 공공예식장 비품대여비 및 관리비 1,000,000원×100건						100	
		◦ 홍보운영비 8,000,000원						8	
자		산		및		물		품	
		◦ 공공예식장 인근 식당 생중계 시스템 3,000,000원×10개소						30	

○ 관련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신규편성할 경우와 다른 위탁사무를 추가하는 등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의 관련 기준에도 민간위탁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및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산편성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 해당 부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난 '21년 7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현 서울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시 동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인지하여 사업별설명서에 '21년 7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나

- 지난 '21년 7월 의결할 당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되는 공공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신규 사업까지 미리 예상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예측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추가하는 것은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될 수 밖에 없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방침서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중 1억원은 공공예식장에서 시행되는 예식 1건당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100건)하기 위하여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관련 기준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위탁사업은 시 직접 추진 사업(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결혼식 전문운영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예식공간 설치비 중 일부(1건당 10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훈령과 서울시 관련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6〉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확대 운영 계획

사			
---	--	--	--

○ 그 외에도 관련 조례는 서울시가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 제4조의7을 통해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 대관료 감면 이외에 공공예식장에서 시행되는 예식 1건당 운영비(100만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동 사업 내용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예식 1건당 100만원을 우회적으로 지원(보조)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보다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별설명서 p.112)

○ 동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39억 1,5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당초 '24년도 본예산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대해
 - 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통비를 분기별로 10만 8,000원씩 지원하기 위해 38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②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지원 하기 위해 7,000 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대해 ‘재학 중인 자녀’뿐만 아니라 ‘학교 밖 자녀’의 **교통비**까지 지원하기로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3-37〉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915	552	4,468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915	552	4,468	○ 교통비(552,960천원) = 1,280명(한부모가족 가녀 증가수) × 552 108,000원(분기별 교통비) × <u>4분기</u>

- 관련 법령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제도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24년 5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24. 5. 9)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인 2~4분기까지, 3개 분기 사업비 증가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되기 이전인 1분기까지 포함한 총 4개 분기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을 편성요청 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24. 5. 9)되기 이전인 '24년도 1분기부터 이미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례로 확인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로서 협의완료 후 제도변경 및 시행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업부서로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수개월이 지난 5월 협의가 완료되어 부득이하게 선조치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시행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 사업에 대한 선제적 예산지원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라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동 사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의 협의를 완료하기 이전인 1분기까지 포함시켜 총 4분기 사업비 증가분을 편성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부서의 제한적인 자료협조로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기에 향후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별설명서, p.135)

○ 동 사업은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12억원이 포함된 1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당초 '24년도 본예산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여성 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추가 공급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소관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3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202
	사	무	관	리	비		1,200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 40,000원*30,000개					1,200
	공	공	운	영	비		2
		◦ 안심이 시스템 공공요금(문자발송) 20원*144,800건					2

○ 동 사업은 추진근거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관련 조례로 하고 있는 바,

- 각 실·본부·국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관련 규칙중 여성가족정책실의 1인가구담당관은 “① 1인가구 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③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④ 1인가구 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⑤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 1인가구에 대해서도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을 지원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현행 관련 규칙의 분장사무를 고려하면 안심벨 지원사업은 1인가구담당관의 사무범위를 관련 시행규칙보다 확대적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안심벨(헬프미)을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우려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사업 방침서에는 일부 물량은 굿즈 판매처인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 유료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으로 ①범죄 피해자, ② 범죄피해 우려자, ③사회안전약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이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이외의 민간인에게 유료판매하는 휴대용 안심벨(헬프미)까지 사무관리비로 제작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지출사례로 판단됨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이외에도 동 사업은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서 사무관리비(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소관 신규사업내용(**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안심벨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안심벨 업무만 “이관”받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로 8억원을 지출한 것이라 하나,

- 특정 사업에 한정된 “업무이관”은 결국 “예산이체”의 한 가지 유형일 뿐이며 자금의 지출·관리·계약 일체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업부서(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는 재무과장에게 계약의뢰하며 예산편성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임을 기재하고 있어 예산의 이체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료되지 않음

- 더욱이 예산의 이체는 사업부서의 예산이체요구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4월 2일, '24년도 1분기 예산이체 내역을 제출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의회로 수신된 공문에는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으로 이체된 내역이나 안심벨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이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서 안심벨과 관련하여 8억원을 집행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한 “이체”를 통한 예산지출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음

- 사업부서의 회신에 의하면, “휴대용 안심벨 지원사업은 추진부서가 변경된 것으로 관련 규칙에 따른 담당 사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무이관 방침없이 1인가구담당관에서 휴대용 안심벨 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 타 실·본부·국의 예산을 지출한 동 사례는 실·본부·국이 상이한 다른 정책사업의 예산을 “이관, 지원, 협조” 등으로 이른바 ‘실무차원의 예산집행방식을 개발하여 지출’한 것으로 관련법의 허용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회계질서를 경시한 행위로써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기만한 결과로 판단됨
- 더욱이 지난 6월11일, 사업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타부서 예산 사용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지출품의시 자치경찰협력과 담당 팀장의 협조결재를 득하여 품의”한 것으로 회신 한 바,
- 사업부서의 의견에 적극 수긍하여 업무조정만으로 실·본부·국은 물론 정책사업까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관련 규칙에는 실·본부·국장간 업무 조정은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부시장 결재를 받은 방침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규칙중 팀장의 전결사항에 대해 실·본부·국을 넘어서까지 예산지출을 용인하는 결정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팀장협조로 예산지출을 품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타 실·본부·국의 예산을 지출한 동 사례의 경우, 사업부서가 회신한 바와 같이 ①이체 대상이 아니며 ②관련 규칙에 따른 담당 사무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무이관 방침이 없고, ③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타 부서 예산을 사용하되 ④지출품의시 자치경찰협력과 담당

팀장의 협조결재를 득하여 예산지출을 품의한 것이라고 반론하여도 결론적으로는 회계질서를 경시한 행위는 물론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기만한 행위로 판단됨

- 회계질서를 경시한 동 행위가 용인된다면 향후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사업주관부서가 “실무차원의 이관, 지원, 협조”라는 자의적 적용을 통해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의도하는 모든 사업에 걸림돌 없이 예산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단초를 남기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타 실·본부·국의 예산을 지출한 동 사례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증액편성 취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전액은 삭감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요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사업별설명서 p.166)

○ 동 사업은 골목상권 환경개선을 통한 유동인구확대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 여건을 마련하고자 공모를 통해 6개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1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부서의 방침을 검토하면, 동 사업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자치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하여 화장실, 키오스크 등 편의시설과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는 것임

〈표 3-39〉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800	1,800	
자치단체 자본보조	-	1,800	1,800	○ 6개 자치구 x 3억원 1,80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는 이미 전통시장의 화장실, 조명, 통행로 등을 개선하는 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과 ②**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사업을 통해 전기, 소방 등 안전취약시설물을 보수하고 있고
- 서울시의 관련 기준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이 서울시의 관련 기준에 따른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특히,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는 것이나,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지원의 경우 대상지를 미리 확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이후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추경안처럼 향후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의 사업방식과 차이가 있어 사업대상을 골목상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부서는 6개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소요예산은 편성요청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기 편성된 기본경비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나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조직별 경비로 한정하고 있어, 편의적으로 기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라 동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사업별설명서 p.278)

○ 동 사업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선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층에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 본예산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요청한 것임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비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1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표 3-40〉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90	△190	-	
사무관리비	10	△10	-	○ 부채 특화 교육 미운영 (비예산 추진) △10
기타보상금	180	△180	-	○ 부채 특화 상담 (비예산 추진) △180

-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업중 유사사업이 있음을 지적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당시 사업부서는 ①청년들이 직접 선정한 청년자율예산이고, ②부채상속 등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 청년에게 부채상환 특화 상담을 하는 것으로 영테크사업과 중복사업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1억 9,0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음

- 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하며 유사·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재원확보를 우선시하여 단 1원도 조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는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한정된 세출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야기한 사례로 사료되어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경제정책실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p.327)

- 동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과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정예산(15억원)보다 10억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4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2,500	1,500	1,000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액				
		500개사* 2,000,000원		1,000	1,500	1,000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관련 기준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 내용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2년 3월에 중소기업 사전협의를 이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을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기업에서 5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이미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 또한 기업별 200만원 한도에서 500만원 한도

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번 추경으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현재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3-42〉 기간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22년 5월~'23년 5월	'23년 8월~'23년 12월	'24년 2월~'24년 12월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제외 업종(숙박, 주류업 등)지원 불가
매출채권보험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기업별 200만원 한도)	매출채권보험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기업별 500만원 한도)	매출채권보험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기업별 5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사전협의 이행 (’22년 3월)	중 소 기 업 사 전 협 의 미 이 행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 협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소요예산의 경우, 사업의 긴급성과는 별개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한 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시 의회에 승인 요청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방침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서울특별시장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다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별설명서 p.345)

- 동 사업은 중구에 영상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6억 6,000만원을 편성된 것이나, 시설비 52억 5,900만원이 포함된 55억 5,8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3년 10월,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건물의 소유(서울시)와 토지의 소유(중구)가 이원화 됨을 사유로 안전에서 삭제한 바,

〈표 3-43〉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660	5,558	6,218	
시설비	523	5,259	5,782	○ 도급공사비 3,160 ○ 관급자재 구입 2,019 ○ 폐기물처리용역 등 25 ○ 설계의도구현용역 54
감리비	137	296	433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296
시설부대비	-	2	2	○ 공사 관련 부대비 등 2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를 사유로 공사현장 관리비용(6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대로 의결한 바 있음
- 서울시가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6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

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소요예산의 편성 여부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의결결과
: 원안가결('24. 6.14)

□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별설명서 p.350)

- 동 사업은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에 선정되어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 국가직접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의 협약에 따른 운영비를 매칭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44〉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조 정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	150	15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150	150	○ 레전드 50+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비 150

- 현행 관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규제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조례에도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과 삼자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

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관련 조례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 이미 지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등의 경우, 재정적 의무부담과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

■ 금번 정례회에도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소요예산의 경우에는 지난 2월 1일,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제323회 임시회 및 금번 제324회 정례회에도 동 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정한 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복지정책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390)

- 동 사업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참여가구에 대해 매월 안심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됨에 따라 기정예산(150억원)보다 15억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3-45〉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5,000	1,500	16,500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5,000	1,500	16,500	○ 안심소득 지원집단 급여 지급액 증가 : 15억원

- 관련 규칙에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업별설명서 중 “증감사유”를 검토하면 당초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① '22년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인가구 인상률(5.5%)을 일괄 적용하였으며, ② 소요예산 산출을 위한 기준액을 과소 추계하고 ③ 오류가 있는 계산식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편성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금번 추경안에는 ① '23년 8월 고시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을 반영하되 안심소득 참여가구 중 4인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4인가구 인상률(6.1%)을 단순 적용하기보다는 가중평균된 인상률(6.72%)을 적용하고, ② 과소추계된 기준액을 정

정하였으며, ③ 오류를 바로잡은 계산식을 적용함에 따라 소요예산(15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동 사업은 '24년도 본예산 성립('23.12) 후 참여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지급액 규모가 증가된 사안이 아니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중앙정부가 이미 고시('23. 8)한 내용을 사업부서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과소추계된 기준액 등을 적용함에 따라 처음부터 부족편성된 소요예산을 금번 추경을 통해 사후적으로 경정요청 하는 사안으로,
- 서울시가 규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사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21년 11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행한 사안으로,

- 우리 시의회는 '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동 사업의 “전달체계”가 기존에 서울시의 출연기관(복지재단)을 통해 수행되던 방식에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추경안 제출시점('24. 5.27)을 경과한 현재까지 해당 절차(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안에 대해 사업부서는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업무가 조정된 것’일 뿐 “전달체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 ① 관련 법을 적용받는 서울시와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복지재단을 동일시하여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내부의 업무조정으로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② 사업부서가 당초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할 당시 협의요청서 중 “전달체계”에는 서울시가 계획수립 등을 수행하고, 복지재단이 대상가구 선정,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어 기 제출한 “전달체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 본예산 의결('23.12.15) 이후에라도 별도의 협의를 이행함으로써 절차적 타당성을 보완하기보다는 추경안 심사시점에서야 단순한 업무조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시한 결과로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시의회로부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적받았음에도 해당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채 본예산 편성시 스스로 발생시킨 오류만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서울시가 정한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성도 충족시키지 못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요예산(15억원)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업별설명서 p.410)

○ 동 사업은 당초 '24년 6월까지 추진하고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4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3억 9,300만원)보다 1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46〉 노인지원주택 운영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93	189	583	
사회복지 사업보조	393	189	583	○ 노인지원주택 운영(91호) 189
				- 인건비 127 (6명×21,269,660원)
				- 커뮤니티룸 관리운영비 35 (4개소×8,750,000원)
				- 사업비 27 (사례관리비 91명×50,000원×6개월)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단계적인 일몰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소요예산(7억 9,300만원) 중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부서도 이에 대해 동의한 것이나,

- 금번 추경안에는 인력을 당초 13명에서 6명으로 감축하고, 커뮤니티룸도 당초 5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는 등 재구조화를 추진함에 따라 상반기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규모(3억 9,300만원)보다는 감소된 하반기 사업비(1억 8,9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증액편성 요청된 소요예산(1억 8,900만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동 사업은 시의회의 예산심사 취지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판단됨

- 우리 시의회는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동 사업에 대한 일몰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소요예산(7억 9,300만원) 중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부서도 이에 대해 동의한 것이나, 금번 추경안은 사업일몰을 취소하기 위해 삭감된 사업비(△4억원) 중 일부(1억 9,800만원)를 복원요청한 것으로서 의회의 심사취지와 부합되는 편성요청인지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1억 8,900만원)를 편성요청 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3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한 결과 심의를 요청한 규모(1억 8,991만 8,000원)보다 사업비를 축소하고 향후 일몰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안을 편성하도록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나,

- 사업부서는 심의 당시 요청한 규모(1억 8,991만 8,000원)보다 사업비를 단 1원도 축소하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요청한 것은 물론 사업일몰을 고려한 증액편성으로 사료되지 않아 증액편성 요청한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셋째, 동 사업은 성과평가지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업부서와 사업부서가 속한 실·본부·국의 자체평가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3년 7월, '22회계연도에 보조사업을 추진한 성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사업부서(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가 속한 실·본부·국(복지정책실)의 차원에서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사안으로,

- 금번 추경안을 통해 증액편성이 승인되더라도 예산규모(5억 8,300만원) 자체는 '23년도(7억 6,200만원)보다 감소된 것이나, 단순히 직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24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일몰하도록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증액편성 요청된 소요예산(1억 8,900만원)은 의회의 심사취지를 존중하지 못한 것임은 물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가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441)

○ 동 사업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38억 3,6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중 ① **사무관리비**(500만원)와 **행사운영비**(1억 7,000만원)는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어르신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며,
- ② **자치단체경상보조금**(29억 7,600만원)은 '24년 3월,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식사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경로당 중식 5일제를 실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시·도별로 수립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것임
- 아울러 '24년 5월, 사업부서는 기존에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하여 온 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으로 편입하고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 ③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2억 4,000만원)의 경우, '24년 7월부터 8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비품을 구입함으로써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것이며,
- ④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4억 4,500만원)의 경우, '24년 9월 개소 예정인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편성요청된 것임

〈표 3-47〉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3,836	3,836	
사 무 관 리 비	-	5	5	○ 어르신일자리박람회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등 5
행 사 운 영 비	-	170	170	○ 어르신일자리박람회 운영 17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	2,976	2,976	○ 어르신일자리사업 운영(중식도우미) 2,976
				- 중식도우미 활동비(공익활동 일자리) 2,808
				- 중식도우미 관리인력 인건비 164
				- 중식도우미 관리인력 복지포인트 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445	445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 75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212
				- 보증금 150
				- 월세 44
				- 관리비 18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사업비 148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240	240	○ 어르신일자리 사업 홍보 10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조성비 240
				- 인테리어 공사비 200
				- 비품 구입비 40

○ 동 사업의 사업내용 중 어르신일자리박람회의 경우, '24년 8월부터 '24년 11월까지 박람회를 추진할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동시에 '24년 8월부터 '25년 3월까지 박람회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업발굴 및 협약체결, 홍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5년 4월,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 회계연도 중 행사가 개최되지 않음에도 박람회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500만원)와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1억 7,000만원)를 포함한 총사업비(1억 7,500만원) 전액을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요청 하고 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 이미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본예산과 비교할 때 소요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 회계연도 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소요예산만 편성요청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나,
 - 동 소요예산(1억 7,500만원)의 경우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비까지 포함시킨 것으로서 예산확보를 우선시한 편성사례로 사료되어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예산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할 민간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1억 5,000만원)과 월세(4,400만원), 관리비(1,800만원)를 일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요청 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임차료(월세)와는 달리 **보증금**은 지출되면 소모되는 정상적 경비가 아니므로 세출과목 중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자본이전**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자본형성적 사업 이외의 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되, 자본형성적 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는 **보증금**(1억 5,000만원)을 정상적 경비만 편성되어야 할 세출과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잘못 편성요청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 통계목(**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도시교통실

□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별설명서 p.533)

- 동 사업은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 운영 시범사업('24. 1.27~'24. 6.30)에 연이어 7월 1일부터는 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동행카드를 중단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정예산(401억원)보다 696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48〉 기후동행카드 운영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40,100	69,684	109,784	
연구용역비	100 ^{주1)}	-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주2)}	69,684	109,684	①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추진 ^{주3)} (50만명×30,000원×5개월×60%) 45,000 ② 청년할인 제도 운영 등 18,925 - 청년에 대해 추가할인을 실시함에 따른 환급액 및 운송손실금 18,900 (30만명×7,000원×9개월) - 환급 관련 수수료 등 25 ③ 단기권 출시 (37만 5,000명×17,000원×60%) 3,825 ④ 수도권 확대 (3만명×30,000원×3개월×60%) 1,620 ⑤ 리버버스 연계할인 (5,230명×3,000원×20일) 313

※ 주1) '24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효과분석 용역비(1억원)가 편성된 것임

주2) '24년도 본예산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서울권역 내에서 지하철 및 버스와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된 운송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주3) 시범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여 온 사업내용(서울권역 내에서 지하철 및 버스와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본사업 추진 시에도 지속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것임

- 산출내역을 검토하면, ① 서울권역 내에서 지하철 및 버스(시내·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24년 7월 이후에도 본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계 연도 중 정산·지원하여야 할 운송손실금 450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 ② 지난 2월 26일부터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일반권과 비교할 때 7,000원을 추가할인 하는 청년할인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189억 2,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청년할인제도 운영시점부터 시범사업 종료시점까지('24. 2.26~24. 6.30)의 이용분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일반권 가격으로 충전·사용하되 사후적으로 추가할인액(월 7,000원)을 개인계좌로 환급 하고,

- 본사업이 추진되는 시점('24. 7)부터는 연령인증 후 추가할인된 가격으로 청년권을 충전·사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운송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환급액과 운송손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189억원)와 환급 관련 수수료 등(2,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아울러 ③ 기존의 시범사업은 30일 동안 사용가능한 기후동행카드(30일 권)만을 운영하였으나, 본사업이 추진되는 '24년 7월부터는 1~5일의 단기권 기후동행카드도 운영하기 위해 38억 2,5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④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권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도 확대적용 하기 위해 16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⑤ 기후동행카드의 사용대상을 기존의 버스, 지하철, 따릉이뿐만 아니라 리버버스까지 확대하기 위해 3억 1,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은 있으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동 사업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용역이 완료된 이후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 '24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 효과분석용역을 추진하며, ㉡ 해당 용역의 결과를 본사업의 사업계획에 반영한 이후 ㉣ '24년 7월부터 본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나,
- 실제 시범사업은 지난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효과분석용역은 3월 22일 착수되어 8월 31일 준공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 추경안 제출시점('24. 5.27)을 경과한 현재까지 효과분석용역의 최종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아 해당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시범사업이 종료('24. 6.30)되더라도 중단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용역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동 사업은 단기권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가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본사업 추진시 기존의 30일권 이외에도 단기권도 도입하기 위해 38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나, 단기권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추경안 제출시점('24. 5.27)을 경과한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신규 추진되는 사업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요청함에 따라 선(先) 예산확보·후(後) 계획수립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발생한 사안에 해당되어 소요예산(38억 2,500만원)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동 사업은 수도권 확대에 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

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사업영역을 기존의 서울권역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16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나,

- 추경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는 수도권의 어느 구간에 대해 언제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할 것인지, 기후동행카드 중 기존의 62,000원권과 65,000원권만 적용할 것인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금번 추경안에는 '24년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사업이 4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소관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은 실물 기후동행카드의 결제수단을 확대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비용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소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자에게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을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연계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49〉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추경안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 편성 세부내역
도시교통실	지 하 철 9 호 선 1 단 계 재 정 지 원	96,446	8	○ 현금으로만 충전가능한 실물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결제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비용(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 8,250천원(결제단말기 30대분) -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 4,400천원(결제단말기 16대분) -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 3,850천원(결제단말기 14대분)
도시교통실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55,988	4	
도시교통실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17,060	3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x)21,272 42,382	(x-) 58	○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자에게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을 보조하는 시범사업(가칭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편성 : 58,500천원

□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579)

- 동 사업은 기정예산 11억 2,700만원(전액 시비)보다 11억 500만원(국비 5억 5,000만원 포함)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3-50〉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x-) 1,127	(x550) 1,105	(x-550) 2,232	
사무관리비	(x-) 333	(x75) 75	(x75) 408	○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임차 및 운행 : 7,500만원 [3억원 × (3/12개월)]
민간경상사업보조	(x-) 683	-	(x-) 683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x-) 90	-	(x-) 90	-
시설비	(x-) 20	(x-) 30	(x-) 50	○ 정밀도로지도 신규 제작 : 3,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x475) 1,000	(x475) 1,000	○ 새벽동행버스 신규 제작 : 10억원 (10억원×2대×50% ^{주1)})

※ 주1) 버스 1대당 제작비용은 10억원이나, 버스 제작기간과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만 편성요청한 것임

- 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노동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① 도봉산역과 영등포역 사이 구간(25.7km)에 자율주행버스를 임차하여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하고자 **사무관리비** 7,500만원(전액 국비)을 편성요청 하고, ② 새벽동행버스 2대를 신규제작 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억원(국비 4억 7,500만원 포함)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한 스마트 도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신규제작 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전액 시비)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정밀도로지도 신규 제작(시설비 3,000만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측량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 서울시의 관련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 추경안 제출시점('24. 5.27)을 경과한 현재까지 해당 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편성사례에 해당하여 소요예산(3,000만원)의 승인여부가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기후환경본부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별설명서 p.615)

- 동 사업은 당초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정 예산 254억 2,200만원(국비 127억 6,700만원 포함)보다 169억 6,000만원(국비 85억 500만원 포함)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3-51〉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x12,767) 25,422	(x8,505) 16,960	(x21,272) 42,382	
기 존 의 국고보조 사 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x12,767) 25,422	(x8,505) 16,902	(x21,272) 42,324	○ 조기폐차 (x8,128) 16,257
					- 4등급 조기폐차 (x5,433) : 300만원 × 3,622대 10,866
					- 5등급 조기폐차 (x683) : 200만원 × 683대 1,366
					-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x2,012) : 2,500만원 × 161대 4,025
					○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x52) 105
					- 1톤 화물차 전동화 (x52) : 1,500만원 × 7대 105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x324) 540
					- 지게차 전동화(리튬인산철 배터리) (x108) : 3,000만원 × 6대 180
					- 지게차 전동화(리튬이온 배터리) (x108) : 3,000만원 × 6대 180
					- 지게차 전동화(수소연료전지) (x108) : 6,000만원 × 3대 180
서울시의 신규 자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	(x-) 58	(x-) 58	○ 기후동행지원금(가칭) 시범사업 (x-) : 180명(신청자) × 6만 5,000원 × 5개월 58

-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 중앙정부(환경부)의 확정내시('23.12)와 시민수요, 실제 보조금 지원단가를 고려하여 기정예산 254억 2,200만원(국비 127억 6,700만원 포함)보다 169억 200만원(국비 85억 500만원 포

함)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외에도, **서울시의 신규 자체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5,8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 ① 조기폐차**의 경우, 중앙정부(환경부)가 확정내시한 물량(1만 1,166대) 전부를 반영하였으나, 중앙정부에 의해 전국에 일률적으로 내시되는 지원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실제 지원하고 있는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확정내시된 규모(194억 2,000만원)보다 국비를 7억 8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 ② **1톤 화물차 전동화와 지게차 전동화(3건)**는 '2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시민의 문의가 많아 확정내시대로 전부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③ 시민의 수요가 많지 않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은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결과 확정내시된 국비규모(234억 3,200만원)와 추경안 중 국비편성액(212억 7,200만원)이 불일치하는 편성사례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내시하는 지원단가가 서울시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고, 시민의 수요가 많지 않은 사업내역은 예산을 편성한 후 불용처리 하기보다는 일부 감액편성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나,

- 국비에 대한 교부권한이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지원단가나 사업물량을 임의조정 하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지원단가와 사업물량을 산정하여 중앙정부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내용이 가급적 수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할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표 3-52〉 국비 확정내시 및 추경안 편성현황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구 분		확정내시('23.12) 현황 ①			추경안 ^{주1)} 편성현황 ②			차이 ③-②		
		지원 단가 (천원)	지원 물량 (대)	국비 규모 (백만원)	지원 단가 (천원)	지원 물량 (대)	국비 규모 (백만원)	지원 단가 (천원)	지원 물량 (대)	국비 규모 (백만원)
합계		-	11,659	23,432	-	11,327	21,272	-	△332	△2,160
① 조기 폐차	4등급 조기폐차 ^{주2)}	3,700	9,622	17,800	3,000	9,622	14,433	△700	-	△3,367
	5등급 조기폐차 ^{주2)}	1,600	1,183	946	2,000	1,183	1,183	400	-	236
	건설기계 조기폐차 ^{주2)}	3,730	361	673	25,000	361	4,512	21,270	-	3,839
②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1톤 화물차 전동화 ^{주2)}	15,000	8	60	15,000	8	60	-	-	-
	저감장치 부착 ^{주2)}	3,300	168	277	3,300	100	165	-	△68	△112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주2)}	15,000	2	15	15,000	1	7	-	△1	△7
③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자게차 전동화 (리튬이온배터리) ^{주3)}	30,000	7	126	30,000	7	126	-	-	-
	자게차 전동화 (리튬이온배터리) ^{주3)}	30,000	7	126	30,000	7	126	-	-	-
	자게차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주3)}	60,000	4	144	60,000	4	144	-	-	-
	저감장치 부착 ^{주3)}	11,000	4	26	11,000	2	13	-	△2	△13
	엔진 교체 ^{주3)}	16,500	260	2,574	16,500	20	198	-	△240	△2,376
	항타항발기 전동화 (리튬이온배터리) ^{주3)}	90,000	1	54	90,000	1	54	-	-	-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주2)}	300,000	1	150	300,000	1	150	-	-	-
	전기굴착기 보급 ^{주2)}	20,000	21	210	20,000	10	100	-	△11	△110
④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카메라) ^{주2)}		50,000	10	250	50,000	-	-	-	△10	△250

※ 국비규모 = 지원단가 × 지원물량 × 국비 지원비율

밑줄과 굵은글씨로 표시된 7개의 사업내역만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 요청된 것이며, 나머지 사업 내역은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임

주1) 기정예산과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된 부분을 합산한 것임

주2) 전체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 50%

주3) 전체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 60%

○ 아울러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민간경상사업보조**(5,800만원)의 경우, '23년 7월 말일까지 기본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중 보조금 수령 후 1년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을 보조하는 서울시 자체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 바,

- 사업부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나,

■ 관련 법령은 저공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보급·개조·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자, 개조자, 교체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일 뿐 폐차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있는 개인까지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4·5등급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폐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기본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일 뿐 조기폐차 이후 차량 미구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의무 부담분 외에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사업은 보조사업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은 내용상으로 구별되는 자체사업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시켜 일괄 편성함으로써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 중 신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5,800만원)은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8) 문화본부

□ 부적정 예산과목 수정 필요

-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648)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652)

-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은 대도구 등 공연물품 창고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고,

〈표 3-5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40
	◦ 대도구 등 공연물품 창고 조성 등 - 파레트, 파레트랙 등 물품 구입 등 40,000,000원			40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은 강북센터에 CCTV 설치·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00만원)와 주차장 캐노피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3억 7,300만원)를 포함한 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5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03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30
	◦ 강북센터 CCTV 설치·운영 1,200,000원*25대			3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373
	◦ 강북센터 주차장 캐노피 제작 400,000원*60m²			24
	◦ 강북센터 주차장 캐노피 설치 6,000,000원			6
	◦ 서초센터 악기구입비 343,000,000원			343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증액 편성요청된 사업내용은 각각 창고 조성, CCTV 설치·운영으로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55〉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내용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 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 (예시)「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경상적 경비 외의 제반경비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별설명서 p.659)

○ 동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중 훼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국비 28억 6,200만원과 그에 대응되는 시비 7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5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x19,499) 28,733	(x2,862) 3,628	(x22,362) 32,362	
시설비	(x13,518) 19,312	(x2,365) 3,378	(x15,883) 22,690	○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등 3,378
자치단체 자본보조	(x5,981) 9,421	(x497) 249	(x6,478) 9,671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49

- 동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전시관 등 보수정비 대상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사업으로, 증액요청된 시설비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성북동 별서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에 33억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가등록문화재(국비 5 : 시비 5)의 수는 감소하고, 국가지정문화재(국비 7 : 시비 3)의 수가 증가되어 국고보조금이 증가(4억 9,700만원)하였음에도 매칭되는 시비는 감액(△2억 4,800만원)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 4,900만원 증액요청하는 것임
- 증액편성 요청된 동 소요예산은 국비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요청건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23년 5월, 제정된 관련 법령이 지난 '24년 2월,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5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문화재”의 명칭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 바,
- 세부사업명에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가 아닌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세부사업명을 그

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임의로 세부사업명에 개정된 용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국고보조금을 내시하는 “국가유산청”에 세부사업명 변경 등을 건의하여 개정된 법률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사업별설명서 p.684)

- 동 사업은 현재 황성에 건립중인 문화유산보존센터(舊 통합수장고)가 '25년 7월 개관 예정으로, 5개 기관에 분산된 소장품의 현황을 조사하고 격납위치 지정하는 용역 등을 통해 이후 운송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57〉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조 정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14,259	650	14,909	
사 무 관 리 비	76	650	726	○ 서울시 5개 기관 600 위탁소장품 포장용역 ○ 위탁소장품 격납배치 용역 50
시 설 비	12,999	-	12,999	
감 리 비	1,180	-	1,180	
시 설 부 대 비	4	-	4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은 공사중 장애 발생 등을 사유로 예산현액(239억 6,000만원)의 45.7%, 109억 5,800만원이 '24년도로 이월된 바,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으로 당초 '24년 11월 준공예정이었던 수장고 건립공사는 '25년 4월로 준공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확

인되어

- 회계연도내에 준공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수장고에 격납될 예정인 소장품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포장용역이 추경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사업별설명서 p.716)

- 동 사업은 서울공예박물관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공공운영비 7,5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표 3-58〉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조 정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3,848	75	3,924	
기간제근로자 등 보 수	362	-	362	
사 무 관 리 비	125	-	125	
공 공 운 영 비	3,170	75	3,246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75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8	-	8	
특정업무경비	33	-	33	
재 료 비	30	-	30	
시 설 비	99	-	99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9	-	19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의 경우에는 경상적 성격이기보다는 자본형성적 성격의 재원으로 사료되는 바, 이미 '24년도 본예산에서도

행정국 소관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은 서소문청사의 GHP를 교체하기 위한 재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 동 소요예산의 예산과목은 **공공운영비**가 아닌 **시설비**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공공운영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기편성된 재원(840만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추경안을 통해 편성요청된 재원과 기편성된 재원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부서가 본예산 심사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서는 해당 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업별설명서가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3-59〉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역	소요예산
공공운영비계				3,170
	○	법정검사수수료 및 보험료(영조물 등)		15
	○	시설물 유지보수(건축, 기계, 전기, 조명)		107
	○	정보통신 회선		28
	○	무인경비시스템		24
	○	서울공예박물관홈페이지 유지관리		104
	○	공예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91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43
	○	정보시스템 본인 확인 서비스 사용료		3
	○	문자전송서비스 사용료		5
	○	정보통신 유지관리 용역		344
	○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670
	○	전시실 안전지킴이 용역		716
	○	안내용역		486
	○	청소용역		435
	○	청사 감염방역 및 해충 소독용역		61
	○	소방 정기점검 대행용역(법정)		10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법정)		12
	○	목동수장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용역		6
	○	박물관 관리 각종 우편물 발송		2

9) 관광체육국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736)

- 동 사업은 방침을 사업근거로 서울 상징물중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유통 등의 업무를 서울관광재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굿즈 추가 제작비 등을 위해 출연금 9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630억 5,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6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출	연	금	63,054	62,122	931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 서울관광 해외홍보 ▷ 글로벌 TV매체 활용 광고 550,000,000원*1회 -서울관광 기념품 홍보마케팅 11,400원*33,500개			931		
				550	-	-
				381		

- 관련 방침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업무조정을 통해 **‘서울브랜드(서울마 이소울)’** 관련 굿즈 등의 업무는 **관광재단**으로, 상징물중 **‘해치’** 관련 제품 개발 등의 업무는 **디자인재단**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조례는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상 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을 통해 상징물 관련 사업 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징물 관련 사업을 방침에 근거한 업무 조정을 통해 조례상 해당 사 업을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으 로 이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가 상징물 관련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한다면 방침에 근거하기 보다는 출연기관도 상징물 관련 업무에 대해 위·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상 근거를 명시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됨
- 따라서 조례상 공공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현 조례에는 불명확하여 추가적인 출연금 편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은 재단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고유의 상징물 사무가 방침을 통한 업무 이관으로 서울관광재단의 고유사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조례는 업무 위탁 및 대행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침에 따른 업무 이관이 아닌 관련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이후 사무 위탁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미식주간**(사업별설명서 p.741)

- 동 사업은 서울의 식문화를 알리는 서울미식주간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행사운영비**를 기정예산(5억원)보다 1억원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61〉 서울미식주간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500	100	600	
행사운영비	500	100	600	○ 서울미식주간 프로그램 기획운영 100

- 서울시는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3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1억 2,000만원 증액된 5억원으로 의결하였고, 금번 추경안에는 1억원을 추가로 증액요청한 것임

○ 관광체육국은 '24년도 본예산부터 동 사업을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사업에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는 본예산에 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서울미식주간**은 금번 증액요청한 규모를 포함하면 6억원이 편성되는 것임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난 '21년 9월, 동 사업과 관련된 투자심사 결과, 예산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적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번 추경안에 제출된 증액규모를 고려하면 두 사업의 예산액은 12억 5,200만원으로 당초 투자심사를 받은 15억원보다는 적은 규모이나, 투자심사 결과 조건이었던 “예산규모 축소”에 부합되는 증액요청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62〉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4년도 본예산	추경편성 요 청 액	'24년도 최종예산 ^{주1)}
총 계	1,152	100	1,252
서 울 뷰 티 관 광 페 스 티 벌 개 최	652	-	652
서 울 미 식 주 간	500	100	500

주1) '24년도 최종예산은 제1회 추경이 의결된 시점 기준임

10) 평생교육국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767)

- 동 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2,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표 3-6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민	간	위	탁	금	15
		◦ 가스열펌프(가스히트펌프 냉 난방기 실외기)저감장치 설치 10,778,000원*1개				10
		◦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필터교체 C 4,298,100원*1개				4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요청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에 대한 소요예산은 자본형 성적 경비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시민건강국

□ 부적정 예산과목 수정 필요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p.844)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848)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신규 사회보장 사업으로, 사업 신설을 위한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체를 각각 이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여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6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0
	◦ 사업 홍보 및 교육 운영					1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8,037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500,000원*16,074명					8,037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
	◦ 사업안내 전단지 제작 150원*10,000장					1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00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000,000원*100명					100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 편성요

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65〉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 예시) 국고보조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보철구 제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 국고보조사업 예산은(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포함) 모두 301-01 통계목에 편성 ※ <u>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모두 301-01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u>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에 편성 ※ <u>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3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u>

12) 재무국

□ 공유재산 반환금 (사업별설명서 p.1009)

- 동 사업은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유재산을 대부 중인 자가 지난 5월 2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해당 공유재산을 매수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24. 5.20)을 기준으로 기존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기 납부받은 '24년도 대부료 중 미사용분('24. 5.20~'24.12.31)을 반환하기 위해 기타반환금등 1억 8,4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3-66〉 공유재산 반환금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84	184	
기타반환금등	-	184	184	○ '24년도 대부료('24. 1. 1~'24.12.31) 중 미사용분('24. 5.20~'24.12.31) 반환 : 184,478,984원(반환금) = 298,758,000원(기 납부된 1년분 대부료) - 114,279,016원(사용액) ※ 사용액('24. 1. 1~'24. 5.19) = 298,758,000원 × (140일/366일)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과 서울시의 관련 기준에는 사업명칭 부여시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세부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반환금”이라는 사업명칭만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중 미사용분을 반환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반환대상이 ‘공유재산 대부료’가 아닌 ‘공유재산’으로 오인되거나 사업내용이 공유재산을 반환한 자에게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사안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재정정보의 수요자가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제반지식 없이도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을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명(공유재산 반환금)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13) 미래공간기획관

□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 (사업별설명서 p.1047)

-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준을 통해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3년 1월, 당시 홍보담당관에서도 서울시 전체 실·본부·국과 출연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 신조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사업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①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2억원)과 ②남산~남대문시장 구간 보행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2억원)을 수행하고자 관련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 궁극적으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인 바, 산책로를 의미하는 외래어 프롬나드(promenade)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이 아님에도 사업부서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관련 조례로 정한 내용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요예산 편성여부와는 별개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기준이 정하고 있는 세부사업명 부여기준은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가 제시한 프롬나드 즉, 산책길 조성보다는 그 이전단계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점에서 사

업명이 사업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로 판단되어 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6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400
시	설	비	400
	○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200
	○ 남산~남대문시장 구간 보행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200

14) 디자인정책관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1053)

- 동 사업은 서울 상징물중 ‘해치’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유통 등의 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굿즈 추가 제작비 6억원 등을 포함한 출연금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6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출	연	금	29,095	28,205	890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890	-	-
		1. 서울굿즈 특화상품 개발 600,000,000원 증액				
		2. '반짝반짝 빛나는 DDP' 290,000,000원 증액				

- 상징물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시 **홍보기획관**(브랜드담당관) 방침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업무조정을 통해 상징물중 ‘해치’ 관련 제품 개발 등의 업무는 **디자인재단**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서울브랜드(서울마이소울)**’ 관련 굿즈 등의 업무는 **관광재단**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음
- **홍보기획관**은 관련 방침으로 업무를 조정할 당시에 디자인정책관은 협조결재를 하였음에도 사업부서(**디자인정책관**)가 서울 상징물중 ‘해치’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유통 등의 업무는 관련 조례중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을 근거로 디자인재단의 고유사무라는 의견이나,
 -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여 직접 관리하는 상징물 관련 사무를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근거로 디자인재단의 고유사무에 포함시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적이며 편의적인 법규 적용 사례

일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방침에도 주체가 아닌 “협조”의 자격으로 결재한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조례는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을 통해 상징물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한 상징물 관련 사업을 방침으로만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조례의 위상에도 부합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시켜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가 상징물 관련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한다면 방침에 근거하기 보다는 출연기관도 상징물 관련 업무에 대해 위·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시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조례상 공공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불명확하여 상징물 개발 등을 위한 추가적인 출연금(6억원) 편성 요청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은 재단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고유의 상징물 사무가 방침을 통한 업무 이관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5) 주택정책실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사업별설명서 p.1173)

- 동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보다 조기에 매입비를 지급하고자 기정예산(293억 9,300만원) 대비 63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69〉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29,393	6,369	35,762	
자산및물품 취득비	29,393	6,369	35,762	○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6,369

- 관련 조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① 건축공정이 20% 이상에 도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의 2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② 건축공정이 35%·50%·65%·80% 이상이 되면 각각 매매대금의 15%에 해당되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③ 매매대금의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10%, 이전고시일 이후에 1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난 '24년 2월, 우리 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발의·의결함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조례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에 신설된 단서조항을 근거로 6개 구역의 매매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매매대금을 조례가 명시한 것보다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기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는 기준 수립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사업부서는 우

리 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24. 2.29)한 지 약 3개월 이상 경과된 현 시점에도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조례가 명시한 것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우리 시의회가 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이미 의결('24. 2.29)하고, 금번 제324회 정례회 중에 편성요청된 소요예산(63억 6,900만원)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조기지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사업부서는 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별설명서 p.1211)

○ 동 사업은 기존의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재개발하여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세출과목 중 전산개발비의 경우, 응용소프트웨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사무관리비의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70〉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229	229	
사무관리비	-	79	79	○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주1)} 79
전산개발비	-	150	150	○ 응용 소프트웨어 재개발 150

※ 주1)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용역 발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포함된 것임

○ 소프트웨어 재개발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칙 등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

당성 심사를 이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여야 하는 바,

- 동 사업은 지난 4월 19일과 4월 22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 5월 10일, 정보화사업비가 사업부서의 요청액(2억 2,200만원)보다 △ 4,800만원 감액된 1억 7,4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 금번 추경안의 경우, 용역 발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300만원)를 제외하고도 2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1억 7,400만원)를 반영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① 지난 4월 18일,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는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 9개월간 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② 지난 4월 22일, 사업부서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공문뿐만 아니라 5월 10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의 주관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가 심사결과를 통보한 공문에도 사업기간이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요청한 단계부터 이미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① 사전절차(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비(2억 2,600만원)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고, ② 예산편성단계부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경비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 도시공간본부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사업별설명서 p.1231)

- 동 사업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71〉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200	200	
연구용역비	-	200	200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200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용역비(연구용역비 2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있어 편성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사업으로 판단됨
- 사업별설명서의 “2024년도 추진일정”에도 용역시행을 '24년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공고 및 발주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용역기간은 5개월 이하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실제 소요예산(5개월분)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용역규모를 고려하면 연도별 분리발주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은 소요예산은 2억원, 용역기간을 12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학술용역 사전심사시에도 사업비는 2억원, 연구기간은 12개월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에는 가급적 본예산을 통한 소요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2〉 추경안 사업별설명서 2024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	
용역시행	'24.08~'25.08	200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 예산의 이월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편성단계에서부터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7) 푸른도시여가국

□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별설명서 p.1307)

- 동 사업은 '25년도 중 개최될 행사('25. 5~'25.10)를 준비하기 위해 10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행사운영비(10억원)의 경우, ① 국내·외 유명작가를 초청하여 200m² 내외의 초청정원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4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② 국제공모를 통해 150m² 내외의 공모정원 1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5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사무관리비(1,000만원)의 경우, 조직위원회 및 공모전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난 '24년 1월 개정된 관련 법령과 '24년 3월 개정된 관련 규칙 등에 따르면 시·도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 이후 “예산편성 전”까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표 3-73〉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010	1,010		
사무관리비	-	10	10	10	○ 조직위원회 운영 등 행사 준비 10	
행사운영비	-	1,000	1,000	1,000	○ 정원조성비 1,000	
					- 초청정원 조성비용 450 (1억 5,000만원 × 3개소)	
					- 공모정원 조성비용 550 (5,000만원 × 11개소)	

- 동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총사업비(28억 1,000만원)가 직전 투자심사(28억 5,000만원) 대비 감소된 것이고, '23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기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관련 규칙 등은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사업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위치를 일부 이동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다시 투자심사(재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행사개최장소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추경안 제출시점('24. 5.27)에 임박하여 사업부서가 수립('24. 5.23)한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5대 권역 중 녹지가 가장 부족한 서남권 일대의 지역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동작구 소재 보라매공원을 행사개최장소로 검토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장소(광진구 소재 뚝섬한강공원)에서 사업위치가 변경되는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예산편성에 앞서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절차(재심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성 사례라는 점에서 소요예산(10억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절차이행 후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동물보호 문화확산 (사업별설명서 p.1339)

○ 동 사업은 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②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전체 설계비 중 일부를 반영하여 기정예산(4억 100만원)보다 11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74〉 동물보호 문화 확산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401	1,100	1,501	
사무관리비	154	-	154	-
행사운영비	100	-	1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	-	4	-
시설비	143	1,100	1,243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설계비 1,100

○ '24년 1월, 서울시는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②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연천군과 체결('24. 1. 5)한 이후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두 시설을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24. 1.30)하였으며,

- 지난 5월 27일, 서울시는 기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조성사업의 내용 및 기간, 서울시의 의무 및 연천군의 지원, 토지의 매각·매입·사용, 공사 착수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실시협약을 연천군과 체결하고자 시의회에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아울러 조성예정인 시설 중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조성부지를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을 통해 취득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② **반려동물 추모관**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기준가격(78억 200만원)이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5월 27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금번 추경안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11억원)

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서울시가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연천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사업내용 등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서야 설계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관련 법령등에 따라 설계비를 편성하기 전에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성요청된 설계비(11억원)는 ㉠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연계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금번 추경안과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은 동일시점('24. 5.27)에 시의회에 제출된 것임에도, 추경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는 두 시설의 설계비가 각각 얼마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전체 설계비 규모만 18억 4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의 붙임자료인 “비용추계 상세내역”에는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계비는 14억 8,400만원이며, ② 반려동물 추모관의 설계비는 2억 8,4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합산한 규모(17억 6,800만원)가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전체 설계비(18억 400만원)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동일시점에 제출된 안건 사이에 설계비 규모가 불일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의결결과
: 원안가결('24. 6.14)

㉡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결결과
: 원안가결('24. 6.17)

18) 물순환안전국

□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사업별설명서 p.1375)

- 동 사업은 목동 재난 체험관에 냉난방 배출가스 저감장치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 1,7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이나

〈표 3-75〉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45	17	362	
공공운영비	0 ^{주1)}	-	0 ^{주1)}	
민간위탁금	345	17	362	○ 냉난방기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3대) 17

주1) 공공운영비는 30만원임

- 이미 지난 '22년 6월, 관련 법 및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바, 목동 재난 체험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고자 소요재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다만, 동 사업은 경상적 경비가 아닌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4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내시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예산편성 및 집행에 앞서 정확한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부서의 예산과목 오류를 감수하지 않은 예산부서 또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세출예산 감액 편성요청 사업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개 세부사업에 대해 △4,350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 51개 세부사업 △2,053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하고,
 -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사업**을 포함한 29개 세부사업에 △2,296억 6,3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76〉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회계명	세부 사업수	기정예산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총 계	80	5,631,407	△ 435,009	5,196,397
일 반 회 계	51	3,136,307	△ 205,346	2,930,961
특 별 회 계	29	2,495,099	△ 229,663	2,265,436

- 감액 요청된 80개 사업중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54억원)을 포함한 17개 사업은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총 △233억 1,000만원을 감액 요청한바,
 -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 요청한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5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및 설계비 집행시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54억원 전액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7〉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편성 요청한 현황

(단위 : 백만원)

실 · 본 부 · 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물 순 환 안 전 국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6,484	△6,484	-
시 민 건 강 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5,400	△5,400	-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5,300	△5,300	-
기 후 환 경 본 부	난 지 물 재 생 센 터 내 지 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2,613	△2,613	-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성 동 교 확 장	1,000	△1,000	-
푸 른 도 시 여 가 국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	500	△500	-
도 시 공 간 본 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480	△480	-
시 민 건 강 국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300	△300	-
미 래 청 년 기 획 단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200	△200	-
평 생 교 육 국	미 래 시 민 학 교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운영	200	△200	-
도 시 공 간 본 부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	200	△200	-
미 래 청 년 기 획 단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190	△190	-
균 형 발 전 본 부	서초 염곡 도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180	△180	-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58	△158	-
문 화 본 부	제 10 회 서 울 국 제 하 모 니 카 페 스티 벌 개 최	100	△100	-
푸 른 도 시 여 가 국	공 유 재 산 관 리	2	△2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후 계 농 업 경 영 인 육 성	0.9	△0.9	-

-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액요청한 80개 사업중 30억원 이상 감액요청한 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48억 9,300만원)을 포함한 13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요청한 사업(4,350억 900만원)의 92.3%, △4,014억 2,700만원으로 검토됨
- 감액 요청한 사업중 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전출금으로 9,5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감액 및 '2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 △1,631억 3,9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 ②**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유후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과 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당초 27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신청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48억 9,3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 그 외 ③**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의 경우, 당초 6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약관리센터조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45억 2,7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표 3-78〉 감액요청된 사업중 30억 이상 감액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 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복 지 정 책 실	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952,715	△163,139	789,576
복 지 정 책 실	의 료 급 여 사 업	1,914,995	△125,534	1,789,460
기 획 조 정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사개발)	348,300	△57,900	290,400
기 획 조 정 실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전 출	76,112	△8,414	67,697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6,715	△6,692	22
물 순 환 안 전 국	난치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6,484	△6,484	-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6,111	△5,641	470
시 민 건 강 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5,400	△5,400	-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미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5,300	△5,300	-
주 택 정 책 실	② 공 공 주 택 건 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27,527	△4,893	22,633
시 민 건 강 국	③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6,145	△4,527	1,617
재난안전관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 환 경 공 간 조 성	12,109	△4,000	8,109
재난안전관리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7,000	△3,500	3,500

○ 아울러 미래청년기획단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에 ①**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100%, △2억원)과 ②**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100%, △1억 9,000만원), ③**서울 청년정책 공모전**(△99.7%, △2억 6,700만원 감액, ④**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99.6%, △66억 9,200만원 감액에 대해 사실상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 요청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①**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은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전액 감액 요청하고, ②**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은 유

사·중복 사업으로 전액 감액 요청하는 것이며 ③**서울 청년정책 공모전**과 ④**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사업종료 등에 따라 기 집행예산을 제외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 경정 요청한 것임

- 추가경정예산이 기정예산의 증·감 조정을 통해 세출재원을 재배치하는 것이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6개월 동안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다가 사업 기간 종료 및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예산액 전액을 감액 조정 요청하는 것은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4년도중 실제 집행가능성을 검토 조차 하지 않고, 예산확보만을 주력한 결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래청년기획단에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기타검토 의견

가. 사업별설명서 작성 개선 관련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준을 통해 예산서 등 주요 서식을 정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 서식 또한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준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설명서 등을 작성할 때 산출근거내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 표시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에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중 일부를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2개 사업에 대해 지방채 규모를 증·감조정(40억원)하고자 세입,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지방채 재원 조정 내역을 명시하지 않아 세출예산을 조정요청하는 사유와 소요 재원 구성에 대한 연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향후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소요 재원의 구성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라고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거나(시급성), 지난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예측불가능성) 등이 심사기준이 될 수 있어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동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사업임을 병기하여 추경안에 포함된 신규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이 심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사업명칭 부여기준은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면서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경제정책실 소관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 기후환경본부 소관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추진,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
- 시민건강국 소관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주택정책실 소관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공간본부 소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균형발전본부 소관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물순환안전국 소관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등은 중복적 표현으로 사업명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출연·출자동의가 필요한 사업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22)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158)
 -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233)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736)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1053)
 -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사업별설명서, p.1165)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별설명서, p.545)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별설명서, p.550)
 -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사업별설명서, p.568)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출연금에 대한 증액요청 5개 사업과 감액요청 1개 사업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증액요청 3개 사업과 신규 편성 1개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소요예산중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출연금을 증액 편성요청한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을 포함한 4개 사업은 관련 규칙에 따라 회기시작 15일 전인 지난 5월 27일 관련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며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과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24. 5.27)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에 관련 출연·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9〉 '24년도 제1회 추경안 관련 출자·출연 동의와 관련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24년도 제1회 추 경 안 출자·출연금	의 안 명 (의 안 번 호)	제출일	회부일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99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 연 동 의 안 (의 안 번 호 1 9 2 3)	'24. 5.27	'24. 5.30
노 동 공 정 상 생 정 책 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1,37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 연 동 의 안 (의 안 번 호 1 9 2 4)	'24. 5.27	'24. 5.30
디지털정책관	서울 디지털 재 단 출 연	200	서울특별시 재 단 법 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 9 2 2)	'24. 5.27	'24. 5.30
디자인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890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 연 동 의 안 (의 안 번 호 1 9 2 0)	'24. 5.27	'24. 5.30
관광체육국	서울 관 광 재 단 출 연 금	93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 연 동 의 안 (의 안 번 호 1 9 5 1)	'24. 5.31	'24. 6. 3
주택정책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21,14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 자 동 의 안 (의 안 번 호 1 9 5 3)	'24. 6. 5	'24. 6. 5

- 출자금을 증액 편성요청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를 포함한 3개 사업의 경우에는 의안의 제출기한인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됨

〈표 3-80〉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과 관련된 3개 세부사업 출자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합 계		60,158	28,186	88,344
도시교통실	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5,998	20,634	56,632
”	②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24,160	2,172	26,332
”	③ 4·7 호 선 전 동 차 증 차 지원	-	5,380	5,380

○ 관련 규칙은 의안을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출연금 9억 3,1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의 경우,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24. 5.27)보다 늦은 지난 5월 31일 제출되었고,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을 위해 출자금 211억 4,4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지난 6월 5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규칙에는 단서로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24년 5월 27일 이후 ①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②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 우리 시의회가 회의규칙중 단서조항을 통해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 의안제출을 지연시킨 사업부서에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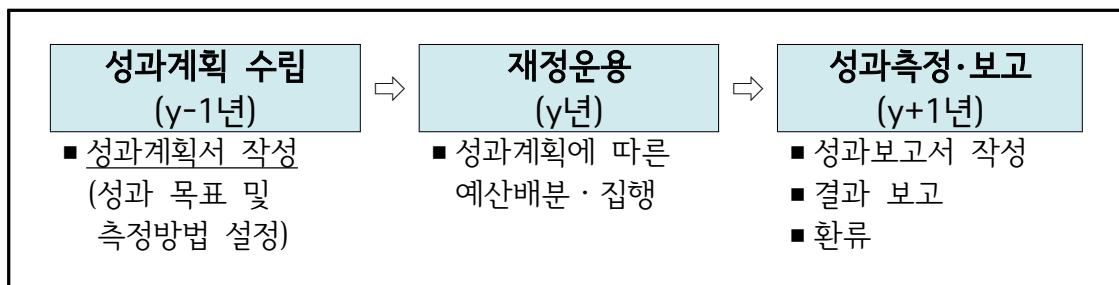
○ 관련 법령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이후 출자·출연 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편성요청된 출자·출연금은 관련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가. 성과계획서 검토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표 3-81〉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다만, 관련 법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기준은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①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하고, ②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③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 '16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예산 확정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사례가 없고, 조직개편

(신설·변경·폐지)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도 최종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①예산변동으로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정해지거나 ②조직이
신설되었음에도 소관 성과지표가 수립되지 않거나 ③조직이 폐지되어 당
초 설정한 성과지표가 필요 없게 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정활동 성과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상
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기준은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
록 정하고 있는 바,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45조 7,405억원)보다
3.4%, 1조 5,585억원이 증가된 47조 2,990억원으로 조정요청하는
것으로 성과계획서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성과계획서를 수정반영하지 않을 경우, '24
회계연도 결산시점에 성과보고서상의 성과목표, 지표, 예산액 등 주요 성
과정보가 성과계획서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나. 성인지예산제 검토

-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에게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책무를 부여한 바,
 - '23년 11월, '24년도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수정 의결되었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보다 3.4%, 1조 5,585억원 증액된 예산으로 경정요청하는 것은 물론,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신규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어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관련 법령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년 11월, '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19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24년도 예산이 수정 의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1조 5,585억 증액된 47조 2,990억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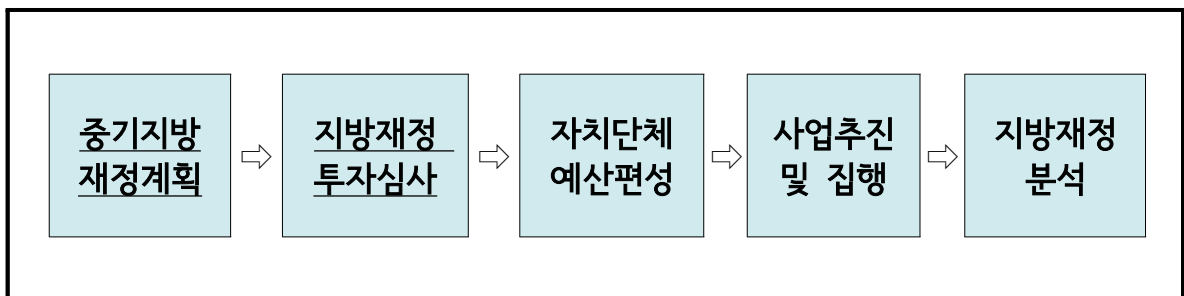
〈표 3-8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24년도 예산안)	' 2 4 년 도 본 예 산 (의 회 의 결) (A)	' 2 4 년 도 제 1 회 추 경 예 산 안 (B)	증 감 (C) = (B) - (A)	증 감 률 (C) / (A)
총 계		45,723,035	45,740,517	47,299,083	1,558,566	3.4
	일 반 회 계	33,055,427	33,049,200	34,205,240	1,156,040	3.5
	특 별 회 계	12,667,607	12,691,316	13,093,843	402,527	3.2

- 다만, 관련 법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관련 법령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칙은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바,
- 관련 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인 **행사성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반영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3〉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7건, 80억 8,000만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24년도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사업부서는 본예산 편성시기를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의 사전절차 미반영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를 근거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나,

- 이는 법령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법적 사전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은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 서울시는 회계연도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부서에서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사유·시기·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표 3-84〉 행사성 사업 증액 편성현황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 예산	증감액	추경안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반영	투자 심사
문화재정책과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1,927	330	2,257	X	'21. 6.24
조 경 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85	290	1,375	X	'23. 3.31
박 물 관 과	서 울 아 트 전 시 (舊아트서울 활성화 사업)	1,200	80	1,280	X	'23.10.16
조 경 과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930	190	1,120	X	'23. 9.22
조 경 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1,000	1,000	X	'23. 3.31
관 광 산 업 과	서 울 미 식 주 간	500	100	600	X	'21. 9.27
기 획 예 산 과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	448	448	X	'23. 5. 3

※ 사업비중 행사운영비(통계목) 예산만 표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 위 원 장 : 이병도(도시계획균형)
- 부위원장 : 신복자(기획경제), 박승진(주택공간)
- 소위원회 : 구미경(행정자치), 박수빈(행정자치)
김재진(환경수자원), 김규남(문화체육관광)
유만희(보건복지), 김 경(보건복지)
이상욱(도시안전건설), 신동원(주택공간)
박영한(도시계획균형), 이경숙(교통)
정지웅(교육), 전병주(교육)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1(금) 15:0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2(토) 14:3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3(일) 15:00 ~ 2024. 6.24(월) 0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발의

- 일 시 : 2024. 6.24(월) (제4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신복자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2024. 6.2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19
----------	------------

2024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I.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
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
하여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다.

II. 수정 주요 골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
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 부 :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내역 1부. 끝.

202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수

정

안

2024. 6.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1. 예산종식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출안			수정안		
제1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단위:천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계	47,299,083,881	1,100,000,000	총계	47,303,251,496	1,100,000,000
일반회계	34,205,240,307	1,000,000,000	일반회계	34,193,239,888	1,000,000,000
특별회계	13,093,843,574	100,000,000	특별회계	13,110,011,608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913,845,650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913,845,650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000	5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3,845,65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3,845,650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1,179,997,924		기타특별회계	11,196,165,958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118,869,417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123,834,417	
(4) 교통사업특별회계	1,721,671,864		(4) 교통사업특별회계	1,729,495,898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3,792,175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3,792,175	
(6)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873,089		(6)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873,089	
(7) 도시개발특별회계	1,682,700,210		(7) 도시개발특별회계	1,685,819,210	
(8) 균형발전특별회계	176,360,256		(8) 균형발전특별회계	176,620,256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94,642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94,642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89,628,485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89,628,485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871,052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871,052	
(12) 소방특별회계	1,024,636,734		(12) 소방특별회계	1,024,636,734	
제2조 ~ 6조(생략)			제2조 ~ 6조(생략)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721,731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231,020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91,721,731천원			(1) 일반예비비 91,231,020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 이하 생략 -			- 이하 생략 -		

2. 세입·세출 중괄 수정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47,299,083,881	4,167,615	32,079,628	△27,912,013	47,303,251,496
일반회계	34,205,240,307	△12,000,419	246,264	△12,246,683	34,193,239,888
특별회계	13,093,843,574	16,168,034	31,833,364	△15,665,330	13,110,011,608
공기업특별회계	1,913,845,650	-	-	-	1,913,845,650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000	-	-	-	970,0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43,845,650	-	-	-	943,845,650
기타특별회계	11,179,997,924	16,168,034	31,833,364	△15,665,330	11,196,165,95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118,869,417	4,965,000	11,130,000	△6,165,000	2,123,834,417
교통사업특별회계	1,721,671,864	7,824,034	17,324,364	△9,500,330	1,729,495,898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23,792,175	-	-	-	223,792,175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873,089	-	-	-	2,400,873,089
도시개발특별회계	1,682,700,210	3,119,000	3,119,000	-	1,685,819,210
균형발전특별회계	176,360,256	260,000	260,000	-	176,620,256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594,642	-	-	-	9,594,64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89,628,485	-	-	-	1,789,628,485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1,871,052	-	-	-	31,871,052
소방특별회계	1,024,636,734	-	-	-	1,024,636,734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47,299,083,881	4,167,615	116,490,110	△112,322,495	47,303,251,496
일 반 회 계		34,205,240,307	△12,000,419	68,809,710	△80,810,129	34,193,239,888
특 별 회 계		13,093,843,574	16,168,034	47,680,400	△31,512,366	13,110,011,60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913,845,650	-	9,560,000	△9,560,000	1,913,845,650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000	-	-	-	970,0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943,845,650	-	9,560,000	△9,560,000	943,845,650
	기 타 특 별 회 계	11,179,997,924	16,168,034	38,120,400	△21,952,366	11,196,165,95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118,869,417	4,965,000	4,965,000	-	2,123,834,417
	교통사업특별회계	1,721,671,864	7,824,034	14,588,000	△6,763,966	1,729,495,898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223,792,175	-	-	-	223,792,175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873,089	-	1,771,000	△1,771,000	2,400,873,089
	도시개발특별회계	1,682,700,210	3,119,000	15,429,000	△12,310,000	1,685,819,210
	균형발전특별회계	176,360,256	260,000	305,000	△45,000	176,620,256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9,594,642	-	-	-	9,594,642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789,628,485	-	-	-	1,789,628,485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1,871,052	-	-	-	31,871,052
	소 방 특 별 회 계	1,024,636,734	-	1,062,400	△1,062,400	1,024,636,734

3. 세부 수정내역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총 계				47,299,083,881	47,303,251,496	4,167,615	[+ 11건 32,293,981 △ 5건 △28,126,366
일 반 회 계				34,205,240,307	34,193,239,888	△12,000,419	[+ 6건 460,617 △ 2건 △12,461,036
보 조 금				7,067,886,532	7,055,865,249	△ 12,021,283	
			국 고 보 조 금 등	7,067,886,532	7,055,865,249	△ 12,021,283	
			국 고 보 조 금 등	7,067,886,532	7,055,865,249	△ 12,021,283	
			국고보조금	6,695,323,355	6,683,302,072	△ 12,021,283	(100-511-01) 국고보조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0 → 49,000 (49,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0 → 38,400 (38,40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지역자활센터운영 297,227 → 551,580 (214,353) ◦ 자활근로사업 17,954,776 → 5,545,740 (△12,409,036)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0 → △52,000 (△52,00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200,000 → 248,000 (48,000) <시립미술관 총무과> ◦ 북서울미술관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0 → 90,000 (90,000)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1,287,417,519	1,287,438,383	20,864	
			보 전 수 입 등	1,036,280,883	1,036,301,747	20,864	
			보조금등반환금	4,043,920	4,064,784	20,864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국고보조금등반 환금	4,043,920	4,064,784	20,864	(100-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챔버리 집행잔액 반환 0 → 20,864 (20,864)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118,869,417	2,123,834,417	4,965,000	[+ 2건 4,965,000 △ 0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6,740,169	791,705,169	4,965,000	
			내 부 거 래	750,041,835	755,006,835	4,965,000	
			전 입 금	292,141,835	303,271,835	11,130,000	
			기타회계전입금	292,141,835	303,271,835	11,130,000	(201-721-03)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과> ◦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95,995,502 → 107,125,502 (11,130,000)
			예탁금및예수금	457,900,000	451,735,000	△ 6,165,000	
			예수금수입	457,900,000	451,735,000	△ 6,165,000	(201-722-01) 예수금수입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75,600,000 → △81,765,000 (△6,165,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721,671,864	1,729,495,898	7,824,034	[+ 2건 17,324,364 △ 2건 △9,500,33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3,882,561	1,111,706,595	7,824,034	
			보 전 수 입 등	70,964,861	70,964,531	△ 330	
			잉 여 금	70,661,028	70,660,698	△ 330	
			순세계잉여금	70,661,028	70,660,698	△ 330	(202-711-01) 순세계잉여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순세계잉여금(교통관리계정) △49,145,730 → △49,146,060 (△330)
			내 부 거 래	1,032,917,700	1,040,742,064	7,824,364	
			전 입 금	646,754,681	664,079,045	17,324,364	
			기타회계전입금	646,754,681	662,181,045	15,426,364	(202-721-03)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84,499,507 → 199,925,871 (15,426,364)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0	1,898,000	1,898,000	(202-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서울시-교육청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육청 분담금 0 → 1,898,000 (1,898,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682,700,210	1,685,819,210	3,119,000	[+ 1건 3,119,000 △ 0건
보 조 금				177,814,885	180,933,885	3,119,000	
			국 고 보 조 금 등	177,814,885	180,933,885	3,119,000	
			국 고 보 조 금	177,814,885	180,933,885	3,119,000	
			국 고 보 조 금	131,173,500	134,292,500	3,119,000	(205-511-01) 국고보조금 <경제정책실 첨단산업과> ◦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부지매입비 0 → 3,119,000 (3,119,000)
균형발전특별회계				176,360,256	176,620,256	260,000	[+ 1건 260,000 △ 0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125,036	74,385,036	260,000	
			내 부 거 래	67,697,439	67,957,439	260,000	
			전 입 금	67,697,439	67,957,439	260,000	
			기타회계전입금	67,697,439	67,957,439	260,000	(215-721-03) 기타회계전입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전입금 △8,414,736 → △8,154,736 (260,000)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단위 : 천원)

과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여성가족정책실			(x1,253,220,026) 3,351,271,692	(x1,253,220,026) 3,352,596,476	1,324,784	┌ + 7건 1,324,784 └ Δ 0건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x61,106,323) 217,009,512	(x61,106,323) 217,827,512	818,000	
	(일반회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x12,438,961) 64,129,292	(x12,438,961) 64,757,292	628,000	
		여성발전센터 운영	8,278,853	8,906,853	628,000	(100-307-05) 민간위탁금 ◦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비 손실보전 0 → 73,000 (73,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동부여성발전센터 체육시설 개선 0 → 128,000 (128,000) ◦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0 → 427,000 (427,000)
	(일반회계)	성평등 문화 확산	(x41,229,462) 119,453,455	(x41,229,462) 119,643,455	190,000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	423,576	613,576	19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2024 서울 출산&실버 페스타 0 → 140,000 (140,000) ◦ 출산율 향상 인식개선 영상제작 0 → 50,000 (50,000)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x37,454,056) 171,242,242	(x37,454,056) 171,670,802	428,560	
	(일반회계)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x14,184) 46,811,904	(x14,184) 47,240,464	428,560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운영(자체)	6,263,903	6,678,063	414,16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일반형 급식비 추가지원 0 → 226,000 (226,000) ◦ 융합형 급식비 추가지원 0 → 188,160 (188,160)
		거점형 키움센 터 운영(자체)	5,204,808	5,219,208	14,400	(100-307-05) 민간위탁금 ◦ 거점형 급식비 추가지원 0 → 14,400 (14,4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아동담당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x302,784,766) 656,679,287	(x302,784,766) 656,679,287	-	
	(일반회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x5,037,045) 14,130,151	(x5,037,045) 14,130,151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지원	(x894,564) 2,913,072	(x894,564) 2,913,072	-	※ 통계목 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 임차료 0 → 2,082 (2,082) (100-307-05) 민간위탁금 ◦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 130,206 → 128,124 (△2,082)
(가족다문화담당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			(x54,088,141) 157,110,184	(x54,088,141) 157,188,408	78,224	
	(일반회계)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5,603,690	5,631,914	28,224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44,549	72,773	28,224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3,949 → 11,773 (7,824) (100-204-02)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0 → 20,400 (20,400)
	(일반회계)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x6,866,765) 27,165,870	(x6,866,765) 27,215,870	50,000	
		다문화가족 한 마당 축제 지원	-	50,000	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개최 0 → 50,000 (50,000) ※ 공모조건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x20,464,385) 264,187,603	(x20,513,385) 265,524,603	(x49,000) 1,387,000	+ 8건 1,387,000 △ 0건
(소상공인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x-) 66,813,649	(x-) 67,213,649	(x-) 4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x-) 66,813,649	(x-) 67,213,649	(x-) 400,00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x-) 22,199,899	(x-) 22,599,899	(x-) 4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0 → 400,000 (400,000) ※ 자치구 지원 조건
(상권 활성화담당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x5,810,546) 50,384,400	(x5,810,546) 50,984,400	(x-) 600,000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 지원	(x-) 14,988,800	(x-) 15,088,800	(x-) 100,000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x-) 1,170,000	(x-) 1,270,000	(x-) 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역특화 상권 활성화 지원 0 → 100,000 (100,000) · 동대문구 장안1동 먹거리 골목 0 → 50,000 (50,000) · 강남구 로데오상가 0 → 50,000 (50,000) ※ 선정심의 위원회 통과 조건
	(일반회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x1,557,546) 29,882,689	(x1,557,546) 30,382,689	(x-) 500,000	
		전통시장 상인역 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	(x-) 317,500	(x-) 417,500	(x-) 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강서구 전통시장 매출 극대화를 위한 상인교육 0 → 50,000 (50,000) ◦ 강서구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 요구 분석 0 → 50,000 (50,00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x-) 4,839,000	(x-) 5,239,000	(x-) 4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 1,000,000 → 1,400,000 (400,000) · 뚝도 청춘 야시장 우리술 축제 0 → 50,000 (50,000) · 성수역골목형상점가 맥주축제 0 → 50,000 (50,000) · 상계중앙시장 수제맥주축제 0 → 50,000 (50,000) · 중랑구 태릉시장 0 → 15,000 (15,000) · 중랑구 꽃빛거리 0 → 15,000 (15,000) · 중랑구 도깨비시장 0 → 20,000 (20,000) · 중구 백학시장 · 관악구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 관악구 은천동 골목형상점가 · 관악구 남현동 골목형상점가 · 강남 도곡시장 상권활성화 축제 · 강동 암사시장 상권활성화 축제 · 동대문 답십리 전통시장 · 중랑구 사가정시장 · 중랑구 면목시장 ·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 성북구 돌곶이시장 · 한양대 상점가 · 송정 벚꽃상점가 · 중랑구 사가정 51길 거리축제 ※ 공모 조건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x2,464,000) 13,431,614	(x2,464,000) 13,481,614	(x-) 50,000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x2,464,000) 12,958,814	(x2,464,000) 13,008,814	(x-) 50,000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x-) 23,864	(x-) 73,864	(x-) 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태조사 및 필요역량개발지원 0 → 50,000 (50,000) ESG 성장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필요역량개발 모델링 연구 용역 50,000
(공정경제담당관) 공정한 거래질서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권익 보호			(x666,975) 4,721,651	(x715,975) 4,770,651	(x49,000) 49,000	
	(일반회계) 소비자 권익 보호		(x666,975) 4,548,251	(x715,975) 4,597,251	(x49,000) 49,00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x426,000) 1,420,000	(x426,000) 1,420,000	(x-) -	※ 통계목 변경 (100-201-01) 사무관리비 ◦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등 280,000 → 100,000(△180,000) - (100-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배달료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홍보 0 → 180,000 (180,00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x-) -	(x49,000) 49,000	(x49,000) 49,000	(100-301-14) 기타보상금 ◦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0 → 49,000 (49,000)
(농수산물유통담당관) 도시생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x11,114,850) 42,103,525	(x11,114,850) 42,351,525	(x-) 248,000	
	(일반회계) 유통거래질서 확립		(x5,558,000) 9,745,179	(x5,558,000) 9,993,179	(x-) 248,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물 류 운 반 장 비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 -	(×-) 248,000	(×-) 248,000	(100-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 가락시장 지상 및 차상장치 0 → 148,000 (148,000) (100-404-01)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 가락시장 인터넷망 설치 및 서버구축 비용 0 → 100,000 (100,000)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서울농업 육성			(×316,500) 2,896,854	(×316,500) 2,936,854	(×-) 40,000	
	(일반회계)	시민농업 활성화	(×62,000) 1,423,255	(×62,000) 1,463,255	(×-) 40,000	
		치 유·도 시 농 업 역량강화 교육	(×-) -	(×-) 40,000	(×-) 4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강사로 등 0 → 40,000 (40,000) ※ 식사 미제공 등 공직선거법 준수 조건

□ 비상기획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비 상 기 획 관	(×584,714) 7,545,300	(×584,714) 7,895,300	(×-) 350,000	[+ 1건 350,000 △ 0건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584,714) 7,090,151	(×584,714) 7,440,151	(×-) 350,000	
	(일반회계)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271,984) 973,906	(×271,984) 1,323,906	(×-) 350,000	
		안전교육센터 기능보강	-	350,000	3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기능보강 0 → 350,000 (350,000) ※ 기능보강에 한정하는 조건

□ 디지털정책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디 지 털 정 책 관	(×4,253,186) 167,231,642	(×4,253,186) 167,681,642	(×-) 450,000	[+ 2건 450,000 △ 0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45,780,591	46,130,591	35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일반회계)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31,907,317	32,257,317	350,000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3,634,377	3,984,377	350,000	(100-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 노원구 CCTV 관제센터 스토리지 확충 및 증설 0 → 150,000 (150,000) ◦ 노원구 CCTV 관제센터 환경개선 0 → 100,000 (100,000) ◦ 송파구 CCTV 구간보안 시스템 설치 0 → 100,000 (1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635,186) 56,719,621	(×635,186) 56,819,621	(×-) 100,000	
	(일반회계)	청사유지관리	12,297,249	12,397,249	100,000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2,684,857	2,784,857	10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먼지흡입 매트 설치 200,000 → 300,000 (100,000)

□ 미래청년기획단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미 래 청 년 기 획 단	(x1,975,000) 108,176,685	(x1,975,000) 108,226,685	(x-) 50,000	[+ 1건 50,000 △ 0건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x1,200,000) 106,297,609	(x1,200,000) 106,347,609	(x-) 50,000	
	(일반회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x1,200,000) 90,235,914	(x1,200,000) 90,285,914	(x-) 50,000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2,868,010	2,918,010	5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 고립·은둔청년 전통무술 체험 지원 0 → 50,000 (50,000)

기획조정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기 획 조 정 실			(x450,000) 1,290,771,276	(x450,000) 1,283,281,569	(x-) △7,489,707	+ 3건 811,004 △ 3건 8,300,711
(기획담당관) 재무활동(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9,874	60,878	51,004	
	(일반회계) 보전지출		9,874	60,878	51,004	
		국고보조금 반환	9,874	60,878	51,004	(100-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 국고보조금 반환(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지원) 9,874 → 60,878 (51,004)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3,287,000	3,787,000	500,000	
	(일반회계) 시정성과주의제고		3,287,000	3,787,000	500,000	
		기관운영경비	2,800,000	3,300,000	5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긴급현안 업무추진 급량비 등 0 → 500,000 (500,000)
(예산담당관) 일반예산(예비비)			118,643,683	118,142,972	△ 500,711	
	(일반회계) 예비비(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111,721,731	111,231,020	△ 490,711	
		예비비(일반회계)	111,721,731	111,231,020	△ 490,711	(100-801-01) 일반예비비 ◦ 예비비 11,171,267 → 10,680,556 (△490,711)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도시개발)		5,934,402	5,924,402	△ 10,000	
		예비비(도시개발)	5,934,402	5,924,402	△ 10,000	(205-801-01) 일반예비비 ◦ 예비비 878,661 → 868,661 (△10,000)
(예산담당관) 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377,257,192	369,717,192	△ 7,540,000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86,857,192	87,117,192	26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67,697,439	67,957,439	260,000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414,736 → △8,154,736 (26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도시개발특별회계)		290,400,000	282,600,000	△ 7,8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예탁(도시 개발)	290,400,000	282,600,000	△ 7,800,000	(205-704-01)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 57,900,000 → △ 65,700,000 (△ 7,800,000)

□ 소방재난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소 방 재 난 본 부			(소 35,768,302) (x 3,438,326) 2,002,362,850	(소 35,768,302) (x 3,438,326) 2,002,362,850	(소 0) (x 0) 0	[+ 4건 1,062,400 △ 1건 △ 1,062,400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기반 강화			(x 1,066,233) 64,234,567	(x 1,066,233) 64,784,567	(x 0) 550,000	
	(소방특별회계) 직무환경 개선 (소방정책사업비계정)		25,677,681	26,227,681	550,000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행정용품 구입	1,101,982	1,601,982	500,000	(21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개인보호장비 보관용 캐비닛 교체 0 → 500,000 (500,000)
		예비비	1,763,042	1,813,042	50,000	(214-801-01) 일반예비비 ◦ 예비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 57,557 → 107,557 (50,000)
(소방행정과) 일반예산(재무활동)			1,016,282,126	1,015,219,726	△ 1,062,400	
	(소방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소방 정책사업비계정)		36,600,000	35,537,600	△ 1,062,4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	36,600,000	35,537,600	△ 1,062,400	(214-704-01)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소방정책사업비계정) 19,700,000 → △ 18,637,600 (△ 1,062,400)
(재난대응과)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소 3,092,509) (x 84,000) 30,132,378	(소 3,092,509) (x 84,000) 30,444,778	(소 0) (x 0) 312,400	
	(소방특별회계) 의용소방대 활성화 (소방정책사업비계정)		3,115,915	3,428,315	312,400	
		의용소방대 운영	3,115,915	3,428,315	312,400	(214-301-05) 의용소방대지원경비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0 → 250,000 (250,000) ◦ 의용소방대 차량 임차비 0 → 62,400 (62,4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예방과)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			(x11,700) 3,659,681	(x11,700) 3,859,681	(x0) 200,000	
	(소방특별회계)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소방정책사업비계정)		(x11,700) 3,659,681	(x11,700) 3,859,681	(x0) 200,000	
		재 난 취 약 계 층 소방안전대책	1,313,010	1,513,010	200,000	(214-201-01) 사무관리비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0 → 200,000 (200,000)

□ 경제정책실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경 제 정 책 실			(x8,884,972) 649,707,887	(x12,003,972) 653,326,887	(x3,119,000) 3,619,000	┌ + 5건 (x3,119,000) 3,619,000 └ △ 0건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126,322,204	126,522,204	200,000	
	(일반회계)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80,653,623	80,853,623	200,000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66,839,655	67,039,655	200,000	(100-306-01) 출연금 ◦ 출연금 0 → 200,000 (200,000) *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구축 0 → 200,000 (200,000) ※ 기업선발 시 공모하는 조건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x2,708,161) 250,760,850	(x2,708,161) 250,910,850	150,000	
	(일반회계)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x170,000) 15,846,367	(x170,000) 15,996,367	150,000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2,529,430	2,679,430	1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취약계층 청년 취업스킬업 프로그램 지원 0 → 150,000 (150,000)
(창업정책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x80,000) 37,082,595	(x80,000) 37,182,595	1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일반회계)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80,000) 37,082,595	(×80,000) 37,182,595	100,000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681,727	781,727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0 → 100,000 (100,000) ※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입주기업 입점지원)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조건
(첨단산업과)			(×2,395,000)	(×5,514,000)	(×3,119,000)	
바이오·AI산업 활성화			37,551,327	40,670,327	3,119,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특별/산업)	(×2,395,000) 7,716,128	(×5,514,000) 10,835,128	(×3,119,000) 3,119,000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395,000) 7,716,128	(×5,514,000) 10,835,128	(×3,119,000) 3,119,000	(205-401-01) 시설비 ◦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부지 매입비 0 → (x3,119,000)3,119,000 (3,119,000)
(뷰티패션산업과)			41,846,954	41,896,954	50,000	
뷰티패션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뷰티패션활성화 및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41,846,954	41,896,954	50,000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6,695,000	6,745,000	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5대업종 작업환경 개선지원 2,000,000 → 2,050,000 (50,000)

□ 복지정책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복 지 정 책 실			(x5,591,525,646) 10,497,845,662	(x5,579,369,363) 10,480,342,332	(x△12,156,283) △17,503,330	[+12건 (x252,753) 2,096,102 △ 3건 (x△12,409,036) △19,599,432
(복지정책과)			(x1,742,974,276) 3,450,189,918	(x1,742,974,276) 3,450,326,618	(x-) 136,7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x1,515,946) 154,642,845	(x1,515,946) 154,688,845	(x-) 46,000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5,666,830	5,712,830	46,000	(100-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0 → 46,000 (46,000)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15,629,247	15,711,247	82,000	
		전달체계 효율화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061,759	1,143,759	82,000	(100-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0 → 82,000 (82,000)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72,614,292	72,622,992	8,700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406,672	415,372	8,700	(100-204-02) 특정업무경비 ◦ 복지정책실 5급이하 대민활동비 (7.1. 조직개편 증가분) 0 → 8,700 (8,700)
(안심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x31,888,468) 311,826,631	(x31,888,468) 311,862,931	(x-) 36,300	
		(일반회계)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102,384,866	102,421,166	36,300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74,322	4,110,622	36,3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967,527 → 2,003,827 (36,300) ◦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승강기 교체) 0 → 36,300 (36,30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x3,079,609,438) 4,008,733,856	(x3,079,609,438) 4,008,792,556	(x-) 58,700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x3,530,000) 40,413,593	(x3,530,000) 40,965,593	(x-) 552,000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7,060,000	7,612,000	552,000	(100-403-02) 공공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화장로 유지보수 등 0 → 552,000 (552,000)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x115,708,313) 365,144,530	(x115,708,313) 364,651,230	(x-) △ 493,300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5,869,227	6,135,440	266,213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시립노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9,325 → 345,538 (266,213) ◦ 광진노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셔틀버스 교체) 0 → 180,000 (180,000) ◦ 금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노후 냉난방기 교체) 0 → 86,213 (86,213)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3,836,850	2,937,337	△ 899,513	※ 통계목 변경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어르신일자리사업 운영(중식도우미) 2,976,000 → 2,076,487 (△ 899,513)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100-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87,710 → 137,710 (△ 15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조성 240,000 → 390,000 (150,000)
		서울 출산&실버 페스타	-	140,000	140,000	(100-201-01) 사무 관리비 ◦ 2024 서울 출산&실버 페스타 0 → 140,000 (140,00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x48,993,033) 247,206,922	(x49,031,433) 246,820,282	(x38,400) △ 386,640	
	(일반회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x48,801,378) 242,747,312	(x48,839,778) 242,360,672	(x38,400) △ 386,640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56,000	106,000	50,000	(100-201-01) 사무 관리비 ◦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0 → 50,000 (50,000)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3,701,185	33,201,185	△ 500,000	(100-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 장애인 버스요금 환급금 9,421,000 → 8,921,000 (△ 500,000)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x-) -	(x38,400) 63,360	(x38,400) 63,36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x0) 0 → (x38,400) 63,360 (63,36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x524,882,268) 1,285,379,245	(x524,882,268) 1,285,909,245	(x-) 530,000	
	(일반회계)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x22,739,591) 108,031,133	(x22,739,591) 108,561,133	(x-) 530,000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x75,983) 1,024,711	(x75,983) 1,054,711	(x-) 3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 장애인생산품 행복장터 운영 (x0) 0 → (x0) 30,000 (30,000)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운영	51,665,360	52,165,360	5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0 → 18,000 (18,0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0 → 482,000 (482,000)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x162,702,276) 240,284,682	(x△ 150,507,593) 222,406,292	(x△ 12,194,683) △ 17,878,390	
	(일반회계)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x162,702,276) 240,284,682	(x△ 150,507,593) 222,406,292	(x△ 12,194,683) △ 17,878,39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지 역 자 활 센 터 운영 지원	(x7,120,403) 11,891,869	(x7,334,756) 12,213,398	(x214,353) 321,52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x297,227) 445,837 → (x511,580) 767,366 (321,529)
		자 활 근 로 사 업 지원	(x99,198,633) 145,491,319	(x86,789,597) 127,291,400	(x△12,409,036) △18,199,91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x17,954,776) 26,333,662 → (x5,545,740) 8,143,743 (△18,199,919)

□ 도시교통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도 시 교 통 실			(x159,559,800) 3,607,774,660	(x159,559,800) 3,636,190,058	28,415,398	[+ 21건 35,179,364 △ 3건 △6,763,966
(교통정책과) 교통체계구축 및 개선			(x34,060,000) 360,756,260	(x34,060,000) 355,192,294	△5,563,966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소통 개선(교통관리계정)		(x34,060,000) 199,028,255	(x34,060,000) 193,364,289	△5,663,966	
		기후동행카드 운영	109,784,000	104,784,000	△5,000,000	(202-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후동행카드 운영 69,684,000 → 64,684,000 (△5,000,000)
		예비비(교통관리 계정)	1,492,571	828,605	△663,966	(202-801-01) 예비비 ◦ 교통관리계정 일반예비비 729,684 → 65,718 (△663,966)
	(도시철도건설사업 비특별회계) 도시철도 도입		0	100,000	100,000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	100,000	100,000	(201-401-01) 시설비 ◦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0 → 100,000 (100,000)
(교통정책과) 재무활동			658,289,810	673,716,174	15,426,364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646,754,681	662,181,045	15,426,364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244,673,725	260,100,089	15,426,364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 184,499,507 → 199,925,871(15,426,364)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x99,572,300) 885,165,446	(x99,572,300) 890,030,446	4,865,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x99,572,300) 885,165,446	(x99,572,300) 890,030,446	4,865,000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63,750,000	64,610,000	860,000	(201-502-01) 출자금 ◦ 독립문역 1번 출입구 E/S 설치 기본구상용역 0 → 40,000 (40,000) ◦ 압구정역 4번 출입구 E/L 설치 기본구상용역 0 → 40,000 (40,000) ◦ 하계역 6번 출입구 E/S 설치 0 → 100,000 (100,000) ◦ 문래역 6번 출입구 E/S 설치 0 → 200,000 (200,000) ◦ 암사역 4번 출입구 E/S 교체 0 → 400,000 (400,000) ◦ 보라매역 5번 출입구 E/S 설치 기본구상용역 0 → 40,000 (40,000) ◦ 광명사거리역 내부(B1-B2) E/S 설치 기본구상용역 0 → 40,000 (40,000) ※ 설치사업은 광명시 부담 조건
		지하철 9호선 2·3단계 재정지원	36,648,000	37,148,000	500,000	(201-403-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전력감시시스템 구축 0 → 500,000 (500,000)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6,800,000	7,760,000	960,000	(201-502-01) 출자금 ◦ 중곡역 1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0 → 320,000 (320,000) ◦ 행당역 3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0 → 320,000 (320,000) ◦ 합정역 7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0 → 320,000 (320,000)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5,051,000	6,046,000	995,000	(201-502-01) 출자금 ◦ 송파역 행선안내게시기 설치 0 → 26,000 (26,000) ◦ 다목적 공기정화시스템 시범 운영 0 → 100,000 (100,000) ※ 제품 공인기관 효과 검증 조건 ◦ 까치산역 1번출구 계단참보수 0 → 20,000 (2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 강서구 지하철역 이용자 불편 수요조사 0 → 50,000 (50,000) ◦ 잠실역~잠실나루역 지상구간 주변지역 소음저감 대책마련 용역 0 → 50,000 (50,000) ◦ 도봉산역 경사로 설치 0 → 300,000 (300,000) ◦ 창동역, 쌍문역 지하철 논슬립 설치 0 → 39,000 (39,000) ◦ 남구로역 1,6번 출입구 측 화장실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0 → 60,000 (60,000) ◦ 지하철역 급수배관 부식억제장비 구매설치 0 → 250,000 (250,000) ◦ 성수역 지하철 출입구 신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 0 → 100,000 (100,000) ※ 타당성 조사 재 실시 비용 조건
		지하철 전력감시시스템 유지보수 및 확대 교체	1,020,000	1,820,000	800,000	(201-502-01) 출자금 ◦ 1~4호선 전기실 전력감시 시스템 구축 0 → 500,000 (500,000) ◦ 1~4호선 노후조명 제어장치 교체 0 → 300,000 (300,000)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3,650,000	4,300,000	650,000	(201-502-01) 출자금 ◦ 애오개역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0 → 250,000 (250,000) ◦ 신촌역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0 → 400,000 (400,000)
		8호선 혼잡도 개선	-	100,000	100,000	(201-502-01) 출자금 ◦ 8호선 혼잡도 개선 용역 0 → 100,000 (100,000)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x20,006,000) 524,570,755	(x20,006,000) 529,130,755	4,56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교통관리계정)		(x20,006,000) 62,244,624	(x20,006,000) 62,804,624	560,000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1,391,000	1,651,000	260,000	(202-401-01) 시설비 ◦ 성동구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0 → 130,000 (130,000) ◦ 서초구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0 → 100,000 (100,000) ※ 서초구에서 기존 승차대 철거 조건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 동대문구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0 → 30,000 (30,000)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4,960,034	5,260,034	300,000	(202-403-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공영차고지 재설치 조성비 0 → 300,000(3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 개선(교통관리계정)		455,200,131	459,200,131	4,000,000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33,559,500	37,559,500	4,000,000	(202-307-09) 운수업계보조금 ◦ 적자업체 지원 0 → 4,000,000 (4,000,000)
(주차계획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			78,411,959	79,511,959	1,1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주차장관리계정)		78,411,959	79,511,959	1,100,000	
		자치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5,127,000	6,135,000	1,008,000	(202-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은평구 불광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0 → 308,000(308,000) ◦ 금천구 독산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0 → 700,000(700,000)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5,679,000	15,729,000	50,000	(202-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공립학교 운동장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0 → 50,000(50,000) ※ 교육청과 부지사용 합의 선행 조건
		예비비(주차장 관리계정)	719,366	761,366	42,000	(202-801-01) 예비비 ◦ 주차장관리계정 일반예비비 14,883 → 56,883 (42,000)
재무활동(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22,900,000	221,800,000	△ 1,1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주차 장관리계정)		222,900,000	221,800,000	△ 1,1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주차장관 리계정)	222,900,000	221,800,000	△ 1,100,000	(202-704-01)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000,000 → 15,900,000(△ 1,100,000)
(보행자전거과)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85,275,765	91,523,765	6,248,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환경 개선 (교통관리계정)	45,131,981	50,379,981	5,248,0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23,073,343	24,971,343	1,898,000	(202-401-01) 시설비 ◦ 서울시-교육청 합동 보호구역 개선 0 → 1,830,350 (1,830,350) (202-401-02) 감리비 ◦ 서울시-교육청 합동 보호구역 개선 0 → 67,650 (67,650)
		보호구역 시설 개선(전환사업)	15,335,000	18,685,000	3,350,000	(202-401-01) 시설비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확충 0 → 3,350,000 (3,350,000) ▶ 광진구 미끄럼방지포장 등 정비 0 → 300,000 (300,000) ▶ 동대문구 미끄럼방지포장 등 정비 0 → 200,000 (200,00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표시 교통안전 표지설치(구로구) 0 → 100,000 (100,000) ▶ 허준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강서구) 0 → 100,000 (100,000) ▶ 구로구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차량 스마트 알림이 구축사업 0 → 400,000 (400,00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표시 교통안전 표지 설치(강서구) 0 → 100,000 (100,000) ▶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송파구) 0 → 200,000 (200,00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표시 교통안전 표지설치(구로구) 0 → 150,000 (150,000) ▶ 강서구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 0 → 230,000 (230,00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조건 ▶ 면동초 보행로 보수(중랑구) 0 → 300,000 (300,000) ▶ 영등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영등포구) 0 → 200,000 (200,000) ▶ 강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 0 → 400,000 (400,000) ▶ 동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설치 0 → 100,000 (100,000) ▶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0 → 350,000 (350,000)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설치공사(동작구) 0 → 200,000 (2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 어린이보호구역 활주로형 횡단보도 LED유도등 설치(동작구) 0 → 20,000 (20,000)
	보행환경 개선 (도시개발특별회계)		(×-) 2,500,000	(×-) 3,500,000	(×-) 1,000,000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 2,500,000	(×-) 3,500,000	(×-) 1,000,000	(202-401-01) 시설비 ◦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 공사비 0 → 1,000,000 (1,000,000)
(교통운영과)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 개선			(×390,000) 69,254,138	(×390,000) 72,134,138	(×-) 2,88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교통관리계정)		49,862,918	52,242,918	2,380,000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29,521,316	31,901,316	2,380,000	(202-401-01) 시설비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0 → 100,000 (100,000) ◦ 교통신호기 보조장치 설치 0 → 1,955,000 (1,955,000) ※ 유지비용 자치구 부담 조건 (202-401-02) 감리비 ◦ 교통신호기 보조장치 설치 0 → 325,000 (325,000) < 신호기 보조장치 > ▶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도봉구) 0 → 180,000 (180,000) ▶ 바닥형 보행신호등 신설(강서구) 0 → 200,000 (200,000)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동대문구) 0 → 150,000 (150,000) ▶ 보행신호 음성안내 신설사업(동대문구) 0 → 250,000 (250,000) ▶ 교통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강북구) 0 → 300,000 (300,000)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동대문구) 0 → 300,000 (300,000) ▶ 보행신호 음성안내 신설(강서구) 0 → 200,000 (200,000) ▶ 서초구 바닥신호등 설치 0 → 100,000 (1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 동대문구 바닥신호등 설치 0 → 200,000 (200,000) • 노원구 바닥신호등 설치 0 → 400,000 (4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교통관리계정)		(×390,000) 11,951,420	(×390,000) 12,321,420	(×-) 370,000	
		교 통 사 망 사 고 줄 이 기	(×390,000) 4,622,200	(×390,000) 4,992,200	(×-) 370,000	(202-401-01) 시설비 ◦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0 → 370,000 (370,000) • 선릉로 내 무단횡단금지시설 신규 설치(강남구) 0 → 100,000 (100,000) • 보행자를 위한 방호울타리 정비(도봉구) 0 → 120,000 (120,000) • 무단횡단금지시설 개선 사업(강북구) 0 → 50,000 (50,000) • 동대문구 일반도로 우회전 태양광 광 섬유 발광형 표지판 설치 0 → 100,000 (1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교통관리계정)		981,800	1,111,800	130,000	
		중앙버스전용 차로 흐름개선	981,800	1,111,800	130,000	(202-401-01) 시설비 ◦ 갯마을 앞 좌회전 차로 신설 0 → 130,000 (130,000)

□ 기후환경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기 후 환 경 본 부			(×196,543,497) 674,907,441	(×196,543,497) 629,197,067	△45,710,374	□ + 3건 408,000 □ △ 1건 46,118,374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544,000) 7,088,457	(×544,000) 7,176,457	88,000	
	(일반회계) 기후위기 안심도시 조성		(×544,000) 6,386,674	(×544,000) 6,474,674	88,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2024 어린이환경페스타 참여 및 홍보 지원	0	88,000	88,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2024 서울어린이환경페스타 0 → 88,000 (88,000)
(친환경차량과) 일반예산(재무활동)			92,608,438	46,490,064	△ 46,118,374	
	(일반회계)	보전지출(친환경차량과)	92,608,438	46,490,064	△ 46,118,374	
		국고보조금 반환	92,608,438	46,490,064	△ 46,118,374	(100-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 2023년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 46,118,374 → 0 (△46,118,374)
(자원회수시설과) 폐기물 처리 기반 조성(폐기물)			114,661,988	114,781,988	120,000	
	(일반회계)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	114,661,988	114,781,988	120,000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	101,199,394	101,319,394	120,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 0 → 120,000 (120,000)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9,513,000) 33,807,561	(×9,513,000) 34,007,561	200,000	
	(일반회계)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1,022,450	1,222,450	200,000	
		취약시설 창문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600,000	800,000	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취약시설 창문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0 → 200,000 (200,000)

□ 문화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문 화 본 부			(X188,896,092) 645,851,664	(X188,896,092) 652,656,664	(×-) 6,805,000	┌ + 15건 6,805,000천원 └ Δ 0건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X43,155,620) 165,770,247	(X43,155,620) 169,475,247	(×-) 3,705,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일반회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6,140,662	6,440,662	300,000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707,372	2,007,372	3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방문화원 문화육성사업 0 → 300,000 (300,000) ※ 1회성 공모사업 조건 (우수 지방문화원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일반회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X41,325,120) 87,306,088	(X41,325,120) 90,511,088	(×-) 3,405,000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1,180,000	2,780,000	1,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호암사 약사전 주변 정비공사 0 → 300,000 (300,000) ※ 건물 외에 주변 정비로 한정하는 조건 ◦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교육관 주변정비 0 → 200,000 (200,000) ◦ 성동구 미타사 관음전 주변정비 사업 0 → 100,000 (100,000) ※ 안전 재해분야로 한정 조건 ◦ 도선사 시설개선 및 정비지원 등 사업 0 → 1,000,000 (1,000,000) ※ 안전 재해분야로 한정 조건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3,600,000	4,905,000	1,305,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종교계 주최 시민참여 행사 지원 등 0 → 1,305,000 (1,305,000)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3,699,000	3,999,000	30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 국제교류문화 행사 지원 등 0 → 300,000 (300,000)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	200,000	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지원 0 → 200,000 (2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X195,199) 113,719,278	(X195,199) 115,889,278	(X-) 2,170,000	
	(일반회계) 문화예술 육성·지원	81,596,620	81,736,620	140,000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845,000	885,000	4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국청소년연극제 참가 지원 0 → 40,000 (4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국악 활성화	1,158,800	1,258,800	10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국악 민간행사 지원 0 → 100,000 (100,000)
	(일반회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19,088,786	21,118,786	2,030,000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육성	12,512,000	14,472,000	1,96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축제 지원 0 → 1,290,000 (1,29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축제 지원 0 → 670,000 (670,000)
		서울축제 지원센터	313,386	383,386	7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축제평가사업 운영 0 → 70,000 (70,000)
	(문화재정책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X24,410,099) 48,021,473	(X24,410,099) 48,121,473	(X-) 100,000	
	(일반회계)	문화재 보존·복원	(X22,362,259) 34,732,497	(X22,362,259) 34,782,497	(x-) 50,000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559,970	1,609,970	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양천향교 터 내삼문 앞 계단 안전 보수 공사 0 → 50,000 (50,000) ※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조건, 구비 30% 확보 조건
	(일반회계)	전통문화 활성화	(X689,940) 8,022,658	(X689,940) 8,072,658	(x-) 50,000	
		서울놀이마당 전통공연 상설운영	100,000	150,000	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송파산대놀이 0 → 50,000 (50,000)
	(문화재관리과) 문화유산 보존·정비		(X108,611,062) 171,591,286	(X108,611,062) 171,721,286	(x-) 13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풍납토성 보존·정비	(X102,978,568) 152,429,240	(X102,978,568) 152,559,240	(x-) 130,000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4,697,000	4,827,000	130,000	(205-207-01) 연구용역비 ◦ 풍납토성 외식문화거리 '(가칭) 풍리단길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0 → 100,000 (100,000) ※ 학술용역 심의 조건부 수용 (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풍납토성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0 → 30,000 (3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52,756,144	53,056,144	300,000	
	(일반회계)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22,164,144	22,464,144	300,000	
		서울아트전시 ((구)아트서울 활성화사업)	1,299,000	1,599,000	3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서울 명소 야외 조각 전시장 조성 및 작품 운송비 80,000 → 380,000 (300,000)
(서울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x4,897,880) 40,242,508	(x4,897,880) 40,642,508	400,000	
	(일반회계)	독서문화 진흥	12,538,988	12,938,988	400,000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	7,498,000	7,898,000	4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책읽는 서울광장 0 → 400,000 (400,000)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			6,681,683	6,681,683	-	
	(일반회계)	박물관 콘텐츠 조성 및 운영	6,681,683	6,681,683	-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3,924,212	-	3,924,212	※ 통계목 변경 (100-201-02) 공공운영비 ◦ 시설물 유지보수 75,676 → △8,400 (△84,076) (100-401-01) 시설비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0 → 84,076 (84,076)

□ 관광체육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관 광 체 육 국			(x31,017,247) 289,776,642	(x31,017,247) 292,072,642	(-) 2,296,000	[+ 8건 2,296,000 △ 0건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82,463,256	83,266,256	803,000	
	(일반회계)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76,566,452	77,369,452	803,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63,054,817	63,354,817	300,000	(100-306-01) 출연금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931,900 → 1,231,900(300,000) ▶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0 → 200,000 (200,000) ▶ 풍납토성 등 서울관광명소 및 정책시민 홍보사업(관광재단) 0 → 100,000 (100,000)
		서울 페스타 2024 개최	2,465,000	2,815,000	350,000	(100-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서울페스타 2025 사전준비 0 → 350,000(350,000)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4,667,442	4,820,442	153,000	(100-401-01) 시설비 ◦ 안전설비 보강 등 0 → 153,000(153,000)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x290,000) 93,146,631	(x290,000) 93,276,631	(x-) 130,000	
	(일반회계)	체육단체 운영 지원	(x290,000) 47,005,972	(x290,000) 47,135,972	(x-) 130,000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	21,849,257	21,979,257	13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회원단체 지원 0 → 130,000 (130,000) ▶ 자치구체육회장배 활성화 지원 0 → 130,000 (130,000) ※ 공모 조건부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x30,727,247) 79,157,251	(x30,727,247) 80,420,251	(x-) 1,263,000	
	(일반회계)	생활체육 활성화	(x6,247,072) 21,594,279	(x6,247,072) 22,714,279	(x-) 1,120,000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6,910,000	8,030,000	1,12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한강체육행사 관련 위원회 운영 등 0 → 170,000 (17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 0 → 950,000 (950,000) ※ 공모 조건부
	(일반회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x6,048,600) 13,711,262	(x6,048,600) 13,754,262	(x-) 43,000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68,062	111,062	43,000	(100-401-01) 시설비 ◦ 노후 시설 보수 50,000 → 93,000 (43,000)
	(일반회계)	장애인체육 활성화	(x18,031,575) 37,703,210	(x18,031,575) 37,803,210	(x-) 1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11,259,897	11,359,897	1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맹단체 및 구지회 지원 0 → 100,000 (100,000) ◦지역명소 장애인어울림한마당 0 → 100,000 (100,000) ※ 공모 조건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16,061,705	16,161,705	100,000	
	(일반회계)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8,652,652	8,752,652	100,000	
		시설물 관리 물품 구입	124,600	224,600	10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체육시설 해충퇴치용 포충기 설치 0 → 100,000 (100,000)

□ 평생교육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평 생 교 육 국			(x14,120,149) 4,426,773,933	(x14,120,149) 4,427,493,933	720,000	[+ 1건 720,000천원 △ 0건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x14,225,897) 90,223,867	(x14,225,897) 90,943,867	(x-) 720,000	
	(일반회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x8,889,046) 70,406,500	(x8,889,046) 71,126,500	(x-) 720,000	
		청소년성문화센 터 운영	(x684,768) 2,624,097	(x684,768) 2,624,097	-	※ 통계목 변경 (100-307-05) 민간위탁금 ◦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15,077 → 4,299 (△10,778)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0 → 10,778 (10,778)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30,534,060	31,254,060	720,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시립청소년센터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0 → 720,000 (720,000)

(단위 : 천원)

과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시 민 건 강 국			(×146,906,281) 706,522,042	(×146,906,281) 707,492,042	(×-) 970,000	[+ 7건 970,000 △ 0건
(스마트건강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20,240,313) 144,222,207	(×20,240,313) 144,372,207	(×-) 150,000	
	(일반회계)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4,713,751) 38,494,391	(×4,713,751) 38,644,391	(×-) 150,000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25,083,000	25,233,000	1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손목닥터 9988 홍보영상 0 → 100,000 (100,000) ▪ 손목닥터 9988 드라마 영상 0 → 50,000 (50,000) ▪ 손목닥터 9988 주제별 쇼츠 영상 0 → 50,000 (50,000) ◦ 손목닥터 9988 효과성 분석 0 → 50,000 (50,000)
	(일반회계)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7,023,578) 88,807,782	(×7,023,578) 88,807,782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8,047,000	8,047,000	-	※ 통계목 변경 (100-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의료비 지원 0 → 8,037,000 (8,037,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의료비 지원 8,037,000 → 0 (△8,037,000)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01,500	101,500	-	※ 통계목 변경 (100-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복원 시술비 지원 0 → 100,000 (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복원 시술비 지원 100,000 → 0 (△100,000)
(정신건강과)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			(×36,411,124) 123,225,494	(×36,411,124) 123,575,494	(×-) 350,000	
	(일반회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36,411,124) 123,225,494	(×36,411,124) 123,575,494	(×-) 35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2,304,750	2,454,750	15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 서울시 청년 자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0 → 150,000 (150,000) ※ 학술용역심의 이행 조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900,000	1,100,000	2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어르신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0 → 200,000 (200,000)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x50,495,640) 116,672,079	(x50,495,640) 116,902,079	(x-) 230,000	
	(일반회계)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 관리	(x4,530,080) 10,699,734	(x4,530,080) 10,749,734	(x-) 50,000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333,880	383,880	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소상공인 대상 방역사업 0 → 50,000 (50,000)
	(일반회계)	공중보건 환경 개선	(x478,636) 4,221,373	(x478,636) 4,401,373	(x-) 180,000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 개최	-	180,000	18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미용예술 경연대회 행사 개최 0 → 180,000 (180,000)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			(x6,339,870) 18,048,590	(x6,339,870) 18,148,590	(x-) 100,000	
	(일반회계)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x6,339,870) 17,669,740	(x6,339,870) 17,769,740	(x-) 100,00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1,391,234	1,491,234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임산부 영양지원 교육 등 0 → 50,000 (50,000) ◦ 아동 영양플러스 교육 등 0 → 50,000 (50,000)
(공공의료추진단)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x5,650,000) 120,713,349	(x5,650,000) 120,853,349	(x-) 140,000	
	(일반회계)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x5,650,000) 120,713,349	(x5,650,000) 120,853,349	(x-) 140,000	
		서울특별시 서남 병원 위탁운영	11,458,272	11,598,272	140,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환자 의료용 침대 교체 0 → 140,000 (140,000)

행정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행 정 국			(×2,451,478) 4,643,430,187	(×2,451,478) 4,643,630,187	(×-) 200,000	[+ 2건 200,000 △ 0건
(대외협력과)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6,154,759	6,304,759	150,000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6,154,759	6,304,759	150,000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538,000	688,000	150,000	(100-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직거래장터 사업 홍보 0 → 150,000 (150,000)
(공무원수련원)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2,193,658	2,243,658	50,000	
	(일반회계) 수련원 관리사업		2,193,658	2,243,658	50,000	
		수련원 유지 및 관리	1,191,096	1,241,096	50,000	(100-401-01) 시설비 ◦ 수련원 내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0 → 50,000 (50,000)

재무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재 무 국			(×1,362,073) 3,213,791,210	(×1,362,073) 3,213,791,210	0	[+ 0건 △ 0건
(재산관리과) 재무활동(재무국 재산관리과)			16,165,007	16,165,007	0	
	(일반회계) 보전지출		16,165,007	16,165,007	0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금	184,479	184,479	0	(100-802-03) 기타반환금등 ◦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 184,479 ※ 세부사업명 변경 공유재산 반환금 →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금

□ 미래공간기획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미 래 공 간 기 획 관			(x1,881,000) 26,169,008	(x1,881,000) 25,176,208	△ 992,800	┌ + 4건 807,200 └ △ 1건 1,800,000
(미래공간기획담당관) 도시경관개선			9,676,045	8,683,245	△ 992,800	
	(일반회계)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9,676,045	8,683,245	△ 992,800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328,360	335,560	7,200	(100-204-02)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 1,800 → 9,000 (7,200)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	3,800,000	2,000,000	△ 1,800,000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공사비 3,400,000 → 1,800,000 (△ 1,600,000) ◦ 기타 부대비 200,000 → 0 (△ 200,000)
		먹골역 지하공간 개선	-	400,000	4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자문회의 비용 등 0 → 10,000 (10,000) (100-401-01) 시설비 ◦ 지하공간 편 스테이션 조성 0 → 390,000 (390,000)
		석계역 지하보차 도로 개선	-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지하보차도로 및 고가하부 개선 0 → 200,000 (200,000)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	-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기본구상 용역비 0 → 200,000 (200,000) ※ '24년 단년도 사업 조건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지역균형발전전략 추진			(x1,881,000) 5,756,550	(x1,881,000) 5,756,550	-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거점육성(특별회계)		(x1,881,000) 4,903,550	(x1,881,000) 4,903,550	-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	400,000	400,000	-	※ 상임위 의결에 따른 사업명 변경 :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 →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

□ 디자인정책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디 자 인 정 책 관			62,917,783	63,677,783	760,000	┌ + 3건 760,000 └ △ 0건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 역량강화			40,188,936	40,488,936	300,000	
	(일반회계) SOFT서울 기반구축		36,248,536	36,548,536	300,000	
		편디자인 시설물 개발	1,755,000	2,055,000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제안서평가 참석수당 1,600 → 3,200 (1,600) ◦ 전문가 자문수당 2,400 → 4,800 (2,400) (100-401-01) 시설비 ◦ 편디자인 놀이공간 구현 0 → 296,000 (296,000)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수준향상			16,172,453	16,632,453	460,000	
	(일반회계) 도시경관개선 및 광고물관리 등		15,920,453	16,380,453	460,000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1,120,000	1,330,000	210,000	(100-401-01) 시설비 ◦ 홍제천(서대문구) 경관조명 설치 0 → 210,000 (210,000)
		수변 야간경관 개선	-	250,000	250,000	(100-401-01) 시설비 ◦ 성북천(성북구) 야간경관 고보조명 설치 0 → 100,000 (100,000) ◦ 불광천(서대문구) 경관조명 설치 0 → 150,000 (150,000)

☐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기 술 심 사 담 당 관			2,918,349	2,930,049	11,700	[+ 1건 11,700천원 △ 0건 0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1,276,857	1,288,557	11,700	
	(일반회계)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62,765	474,465	11,700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62,765	474,465	11,700	(100-204-02) 특정업무경비 ◦ 대민 활동비 0 → 11,700 (11,700)

재난안전관리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소6,498,194) (×9,519,808) 1,158,320,570	(소6,498,194) (×9,519,808) 1,159,723,570	(소-) (×-) 1,403,000	[+ 12건 5,903,000천원 △ 1 건 △ 4,500,000천원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3,500,000) 254,777,349	(×3,500,000) 251,077,349	(×-) △3,7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간선도로망 확충		187,218,611	182,718,611	△4,500,000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10,380,000	5,880,000	△4,500,000	(205-401-01) 시설비 ◦ 보상비 4,610,000→110,000 (△4,5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간선도로망 확충		8,000,000	8,800,000	800,000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교통관리계정)	-	800,000	800,000	(202-401-01) 시설비 ◦ 공사비 0→700,000 (700,000) (202-401-02) 감리비 ◦ 감리비 0→100,000 (100,000)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3,108,000) 244,458,351	(×3,108,000) 247,408,351	(×-) 2,950,000	
	(일반회계)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77,562,839	77,962,839	400,000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6,475,000	6,775,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 도로안전시설(미끄럼방지포장) 정비 0→300,000 (300,000) ▸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미끄럼방지 0 → 100,000 (100,000) ▸ 미끄럼 방지(강서 1억, 남부 1억) 0 → 200,000 (200,000)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1,060,800	1,160,800	100,000	(100-401-01) 시설비 ◦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0→100,000 (100,000) ▸ 중랑구 망우로외 1개소 노후난간 정비사업 0 → 100,000 (1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166,895,512	169,445,512	2,550,000	
		노후 포장도로 정비	95,640,470	96,240,470	600,000	(205-401-01) 시설비 ◦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비 0→600,000 (600,000) ▸ 한강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비 0 → 600,000 (600,000)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시도 보도 유지 관리	23,301,200	24,401,200	1,100,000	(205-401-01) 시설비 ◦ 보도 유지 관리 0 → 1,100,000 (1,100,000) ▸ 곰달래로 노후 보도 정비 0 → 400,000 (400,000) ▸ 강변역 주변 노후보도 정비공사 0 → 300,000 (300,000) ▸ 올림픽로(천호공원사거리 ~ 암사역사 거리) 노후 보도 정비 0 → 400,000 (400,000)
		노면 표시 유지 관리 사업	19,373,200	20,223,200	850,000	(205-401-01) 시설비 ◦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 0 → 850,000 (850,000) ▸ 중랑구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0 → 400,000 (400,000) ※ 시도로 설치 조건 ▸ 강북구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 0 → 250,000 (250,000) ※ 시도로 설치 조건 ▸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도로표지병 0 → 200,000 (200,000)
(도로시설과)			(×2,375,508)	(×2,375,508)	(x-)	
도로시설관리			252,749,475	254,702,475	1,953,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시설물 운영	36,646,183	36,796,183	150,000	
		도로시설물 (자치구 위임 관리) 긴급보수	3,439,000	3,589,000	150,000	(205-401-01) 시설비 ◦ 보도육교 보수보강 등 0 → 150,000 (150,000) ▸ 세검 보도육교 등 3개소 보수·보강공사 0 → 150,000(15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950,000)	(×1,950,000)	(x-)	
기전시설물 관리			55,062,723	56,865,723	1,803,000	
		노후 도로조명 시설 개량 사업	13,180,100	13,480,100	300,000	(205-401-01) 시설비 ◦ 도로 조명시설 개량 0 → 300,000 (300,000) ▸ 역삼로 가로등 개량 공사 0 → 300,000 (300,000)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5,110,000	5,510,000	400,000	(205-401-01) 시설비 ◦ 디밍제어시스템 설치 0 → 400,000 (400,000)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8,213,000	9,316,000	1,103,000	(205-401-01) 시설비 ◦ 남산터널 관리사무소 개선 0 → 1,103,000 (1,103,000) ▸ 남산터널 관리사무소 개선 0 → 800,000 (800,000) ▸ 서부도로사업소 남산1,2,3호터널 통합상황실 구축 0 → 303,000 (303,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교량안전과)			(소6,498,194)	(소6,498,194)	(소-)	
교량관리			94,514,397	94,714,397	2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46,156,259	46,256,259	100,000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 안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0	100,000	100,000	(205-401-01) 시설비 ◦ 타당성검토비 0 → 100,000(100,000) ▶ 한강교량 추락방지망 등 자살예방 난간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 0 → 100,000 (1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21,271,915	21,371,915	100,000	
	일반교량관리					
		상계교 보수공사	700,000	800,000	100,000	(205-401-01) 시설비 ◦ 보수공사비 0 → 100,000(100,000) ▶ 상계교 보수공사 0 → 100,000 (100,000)

□ 주택정책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주 택 정 책 실			(×919,602,928) 3,643,450,001	(×919,602,928) 3,643,400,947	(×-) △49,054	ㄱ + 3건 1,771,000 ㄴ △ 3건 1,820,054
(주택정책과)			(×678,800,749)	(×678,800,749)	(×-)	
서민주거 안정도모			1,360,374,895	1,360,474,895	1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9,650,000)	(×9,650,000)	(×-)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176,651,060	176,751,060	100,000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 167,001,060	(×-) 167,101,060	(×-) 100,000	(204-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SH임대주택 VR 조성 0 → 100,000 (100,000)
(주거정비과)			(×-)	(×-)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38,090,257	38,019,257	△7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	(×-)	(×-)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33,290,257	33,219,257	△71,000	
		예비비(도정)	(×-) 958,690	(×-) 887,690	(×-) △71,000	(204-801-01) 일반예비비 ◦ 예비비(도정) 73,808 → 2,808 (△71,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주거정비과) 재무활동			(×-) 719,516,048	(×-) 717,816,048	(×-) △ 1,7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도정)		(×-) 527,000,000	(×-) 525,300,000	(×-) △ 1,70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도정)	(×-) 527,000,000	(×-) 525,300,000	(×-) △ 1,700,000	(204-704-01)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정) 4,000,000 → 2,300,000 (△ 1,700,000)
(주거환경개선과)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1,155,000) 2,052,500	(×1,155,000) 3,723,500	(×-) 1,67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1,155,000) 1,333,000	(×1,155,000) 3,004,000	(×-) 1,671,000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 -	(×-) 1,117,000	(×-) 1,117,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공영주차장 확충) 0 → 1,117,000 (1,117,000)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 -	(×-) 554,000	(×-) 554,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생활SOC조성 0 → 554,000 (554,000)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107,000) 1,930,489	(×107,000) 1,881,435	(×-) △ 49,054	
	(일반회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107,000) 1,930,489	(×107,000) 1,881,435	(×-) △ 49,054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구축 시스템 관리	(×-) 229,000	(×-) 179,946	(×-) △ 49,054	(100-207-02) 전산개발비 ◦ 응용 소프트웨어 재개발 150,000 → 100,946 (△ 49,054)

도시공간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도 시 공 간 본 부			(×1,401,113) 30,465,716	(×1,349,113) 30,486,716	(×△ 52,000) 21,000	[+ 2건 123,000 △ 2건 (×52,000)102,000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의 실행력 강화			2,825,708	2,828,708	3,000	
	(일반회계) 도시공간 전략 마련		2,596,708	2,599,708	3,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390,278	393,278	3,000	(100-204-02)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 22,200 → 25,200 (3,0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2,745,027	2,695,027	△ 50,000	
	(일반회계)	도시발전연구	2,686,028	2,636,028	△ 50,000	
		공향분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250,000	200,000	△ 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세미나 기획 및 개최운영 100,000 → 50,000 (△ 50,000)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x1,401,113) 4,004,287	(x1,349,113) 4,072,287	(x△ 52,000) 68,000	
	(일반회계)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x1,401,113) 3,933,187	(x1,349,113) 4,001,187	(x△ 52,000) 68,000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120,000	12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 학술용역비 0 → 120,000 (120,000)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경계오 류 정비)	(x900,000) 1,300,000	(x848,000) 1,248,000	(x△ 52,000) △ 5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적(임야)도 경계 오류 정비 지원 (x900,000)1,300,000 → (x848,000)1,248,000 ((△ x52,000)△ 52,000)

□ 균형발전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균 형 발 전 본 부			(x94,400) 1,451,390,706	(x94,400) 1,451,650,706	(x-) 260,000	[+ 1건 260,000 △ 0건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기반 제고			1,691,157	1,951,157	26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인프라 확충	100,000	360,000	260,000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 및 지하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260,000	260,000	(215-401-01) 시설비 ◦ 기술용역비 1차수 0 → 260,000 (26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서부권사업과) 균형발전 기반제고			8,543,873	8,543,873	-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 계획수립		8,543,873	8,543,873	-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	7,818,873	7,818,873	-	※ 통계목 변경 (215-201-02) 공공운영비 ◦ 교통유발부담금 0 → 45,000 (45,000) (215-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시설물 관리 대행 사업비 232,000 → 187,000 (△45,000)

□ 푸른도시여가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푸 른 도 시 여 가 국			(x42,101,886) 458,731,043	(x42,149,886) 470,233,463	(x48,000) 11,502,420	┌ + 27건 14,023,400 └ △ 4건 △2,520,980
(공원여가정책과)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x5,312,053) 98,966,721	(x5,312,053) 102,516,721	(x0) 3,550,000	
	(일반회계) 공원 녹지정책 수립·운영		726,907	1,026,907	300,000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714,107	1,014,107	3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비 0 → 300,000 (300,000)
	(일반회계)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x1,152,053) 41,764,237	(x1,152,053) 42,804,237	(x0) 1,040,000	
		공원 내 공원등 시설 개선	5,568,050	6,608,050	1,040,000	(100-401-01) 시설비 ◦ 우장산 등 경관조명 환경개선 0 → 190,000 (190,000) ◦ 봉제산 등 경관조명 환경개선 0 → 150,000 (150,000) ◦ 용마폭포공원 경관조명 개선 0 → 200,000 (200,000) ◦ 앵봉산 가족캠핑장 경관조명 설치 0 → 200,000 (200,000) ◦ 영등포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0 → 150,000 (15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배봉산근린공원 야외무대 조명 및 음향설비 구축 0 → 150,000 (15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x4,160,000) 55,865,150	(x4,160,000) 58,075,150	(x0) 2,210,000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41,420,330	43,630,330	2,210,000	(205-401-01) 시설비 - 아차산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0 → 50,000 (50,000) - 천왕산가족캠핑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0 → 50,000 (50,000) - 하반기 갈산근린공원 보수정비 0 → 500,000 (500,000) - 서리풀공원 노후산책로 정비 0 → 300,000 (300,000) - 공산근린공원 노후시설물 개선 0 → 110,000 (110,000) - 화랑대철도공원 보수정비 0 → 100,000 (100,000) - 효창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0 → 300,000 (300,000) - 하반기 명일근린공원 보수정비 0 → 200,000 (200,000) - 일자산근린공원 경관개선 0 → 150,000 (150,000) - 하반기 배봉산근린공원 보수정비 0 → 250,000 (250,000) - 홍릉근린공원 보수정비 0 → 200,000 (200,000)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x5,000,000) 73,505,214	(x5,000,000) 75,205,214	(x0) 1,7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심공원 확충	(x5,000,000) 31,120,714	(x5,000,000) 32,820,714	(x0) 1,700,000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14,345,000	15,745,000	1,400,000	(205-401-01) 시설비 - 북악산근린공원(성북, 성북동 산23-12일대) 조성 0 → 300,000 (300,000) - 온수근린공원(구로, 문현지구, 오류동 산559일대) 조성 0 → 1,500,000 (500,000) - 온수근린공원(구로, 텃밭지구 오류동 산584) 조성 0 → 300,000 (300,000) - 불암산근린공원(노원, 중계동 363-12 일대) 조성 0 → 200,000 (200,000) - 불암산근린공원(노원, 중계동 산139-2일대) 조성 0 → 100,000 (1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200,000	500,000	300,000	(205-401-01) 시설비 ◦ 백련 테마형 복합 힐링공원 조성(꿈마을 숲정이) 0 → 300,000 (300,000)
(조경과)			(x4,390,280)	(x4,390,280)	(x0)	
생활주변 녹지확충			47,635,113	49,924,113	2,289,000	
	(일반회계)		9,266,500	9,488,500	222,000	
	생활주변 녹지 확충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1,070,000	1,27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선유봉 마을마당 보수정비 0 → 200,000 (200,000)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2,000,000	2,700,000	700,000	(100-401-01) 시설비 ◦ 노원역 고가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0 → 700,000 (700,000)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1,078,000	100,000	△ 978,000	(100-401-01) 시설비 ◦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1,078,000 → 100,000 (△ 978,000)
		스마트 이끼 녹화 조성	-	300,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 스마트 이끼녹화 조성 0 → 300,000 (300,000)
	(일반회계)		(x990,280)	(x990,280)	(x0)	
	시민참여 녹지 조성		6,470,918	6,370,918	△ 100,000	
		2025 서울국제정 원박람회	1,010,000	910,000	△ 1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정원조성비 1,010,000 → 910,000 (△ 100,000)
	(일반회계)		(x2,150,000)	(x2,150,000)	(x0)	
	녹지보전 강화		22,355,695	22,855,695	500,000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4,074,695	14,574,695	500,000	(100-401-01) 시설비 ◦ 성동구 무학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100,000 (100,000) ◦ 영등포구 도림천로 가로변 녹지량 확충 0 → 250,000 (250,000) ◦ 강동구 고덕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0 → 150,000 (15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3,862,000	5,529,000	1,667,000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 (녹지) 조성 및 재정비	3,862,000	5,529,000	1,667,000	(205-401-01) 시설비 ◦ 경원선 완충녹지 재정비 0 → 750,000 (750,000) ◦ 마곡동 시설녹지 보수정비 0 → 300,000 (300,000) ◦ 강변 오솔길 정비 0 → 617,000 (617,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x8,237,025) 48,112,304	(x8,285,025) 50,191,324	(x48,000) 2,079,020	
	(일반회계) 생태계 복원		3,784,000	4,174,000	390,000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3,784,000	4,174,000	390,000	(100-401-01) 시설비 ◦ 도림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관악구) 0 → 100,000 (100,000) ◦ 중랑천 생태녹화 및 환경개선사업 (동대문구) 0 → 290,000 (290,000)
	(일반회계) 생태계 보전		(x5,600,825) 37,661,600	(x5,648,825) 39,351,620	(x48,000) 1,689,020	
		근교산 등산로 정비	17,297,000	18,597,000	1,300,000	(100-401-01) 시설비 ◦ 용마산 등산로 정비 0 → 350,000 (350,000) ◦ 수락산·불안산 등산로 정비 0 → 300,000 (300,000) ◦ 까치산 무장애숲길 조성 0 → 200,000 (200,000) ◦ 등산로 매력가든 조성 0 → 150,000 (150,000) ◦ 안산 등 등산로 정비 0 → 300,000 (300,000)
		서울둘레길 정비	1,768,580	1,910,000	141,420	(100-201-02) 공공운영비 ◦ 공제보험 가입비 8,580 → 0 (△8,580) (100-401-01) 시설비 ◦ 서울둘레길 정비 0 → 150,000 (150,000)
		거점형 산림여가 시설 조성	450,000	65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0 → 200,000 (200,000)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방제)	(x2,217,190) 3,051,353	(x2,265,190) 3,113,753	(x48,000) 62,400	※ 통계목 변경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긴급방제사업 (x200,000) 320,000 → (x248,000) 382,400 [(x48,000) 62,400]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740,000	725,600	△ 14,400	(100-401-01) 시설비 ◦ 산림병해충방제(소나무재선충병) 240,000 → 225,600 (△ 14,400)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x2,193,816) 9,539,821	(x2,193,816) 9,539,821	-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일반회계)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x707,135) 7,454,091	(x707,135) 7,454,091	-	
		동물보호 문화확산	1,501,800	401,800	△ 1,100,000	(100-401-01) 시설비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1,100,000 → 0 (△ 1,100,000)
		서울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1,100,000	1,100,000	(100-401-01) 시설비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0 → 1,100,000 (1,100,000)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10,355,528	10,819,528	464,000	
	(일반회계)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지원	10,355,528	10,819,528	464,000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4,362,615	4,472,615	110,000	(100-401-01) 시설비 ◦ 서울숲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0 → 110,000 (110,000)
		울현공원 시설물 정비	702,000	1,056,000	354,000	(100-401-01) 시설비 ◦ 황톳길 정비 0 → 154,000 (154,000) ◦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0 → 200,000 (200,000)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서울의 대표공원인 남산의 세계화			12,190,750	12,490,750	300,000	
	(일반회계)	남산 및 산하공원 보수정비	4,382,912	4,682,912	300,000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4,382,912	4,682,912	300,000	(100-401-01) 시설비 ◦ 남산 매력가든 조성 0 → 150,000 (150,000) ◦ 남산 및 산하공원 안전웬스 설치 0 → 150,000 (150,000)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25,144,974	25,394,974	250,000	
	(일반회계)	산하공원 운영	23,944,028	24,194,028	250,000	
		경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1,649,761	1,699,761	50,000	(100-401-01) 시설비 ◦ 경의선숲길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0 → 50,000 (5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월드컵 난지체육공원 조성	-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난지체육공원 시설공사 0 → 200,000 (200,000)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화와 여가가 흐르는 품격높은 공원운영			(x152,000) 13,448,037	(x152,000) 13,598,037	(x0) 150,000	
	(일반회계)	북서울꿈의숲 및 산하공원 운영	13,068,037	13,218,037	150,000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8,114,768	8,264,768	150,000	(100-401-01) 시설비 ◦ 북서울꿈의숲 체육시설 및 조경 정비 0 → 150,000 (150,000)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수준의 식물원 운영			15,721,738	15,821,738	100,000	
	(일반회계)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활성화	14,005,298	14,105,298	100,000	
		서울식물원 홍보	395,800	495,800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버스 및 전자계시대 등 홍보 0 → 100,000 (1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x70,000) 37,119,470	(x70,000) 37,739,470	(x0) 620,000	
	(일반회계)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262,712	2,362,712	100,000	
		공원 홍보기능 강화	561,632	661,632	100,000	(100-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옥외전광판 광고 0 → 100,000 (100,000)
	(일반회계)	시민만족도 향상	12,648,438	12,748,438	100,000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	3,257,618	3,332,618	75,000	(100-401-01) 시설비 ◦ 공원 시설안전 및 방법용 CCTV 설치 0 → 75,000 (75,000)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1,968,548	1,993,548	25,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시설청소원 업무분석 및 지원조 업무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 0 → 25,000 (25,000)
	(일반회계)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4,068,327	14,478,327	42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9,688,023	10,108,023	420,000	(100-401-01) 시설비 ◦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0 → 420,000 (420,000)

□ 물순환안전국(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물 순 환 안 전 국			277,166,104	279,416,104	2,250,000	[+ 14건 2,950,000 △ 2건 △700,000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관리			221,825,204	224,075,204	2,250,000	
	(일반회계) 수방대책 사업		44,630,357	44,730,357	100,000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	362,900	362,900	-	※ 통계목 변경 (100-307-01) 민간위탁금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17,000 → 0 (△17,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0 → 17,000 (17,000)
		가산빗물펌프장 119안전센터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0	10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 가산빗물펌프장 119안전센터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0 → 100,000 (100,000)
	(일반회계) 하천복원 및 정비		32,966,326	34,216,326	1,250,000	
		종량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3,600,000	3,4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살곶이지구 호안정비, 도류제지구 조경 식재, 폐기물 처리 800,000 → 600,000 (△200,000)
		홍제천, 불광천(서대문구) 유지용수 수질개선 정비공사	0	140,000	14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140,000 (140,000)
		방학천·도봉천 (도봉구) 산책로 정비	0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200,000 (200,000)
		양재천(대치2동 주변) 뚝방 지역주민 여가공간 확충	0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200,000 (200,000)

(단위 : 천원)

과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1,900,000	1,400,000	△5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900,000 → 400,000 (△500,000)
		하천 환경 안전 관리 사업	700,000	80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100,000 (100,000)
		반포천(서초구) 하류부 환경정비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0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0 → 200,000 (200,000)
		송정제방길(성동구) 데크설치	0	50,000	5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50,000 (50,000)
		제방산책로(동대문구) 환경정비	0	290,000	29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290,000 (290,000)
		불광천(은평구) 신사교 하부 박스 준설	0	10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100,000 (100,000)
		불광천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0	10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100,000 (100,000)
		우이천(노원구) 횡단목교 설치	0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200,000 (200,000)
		중랑천(노원구) 자전거도로 도로표지병 설치	0	10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 자전거도로 도로표지병 설치비 0 → 100,000 (100,000)
		중랑천 주민편익 및 체육시설 환경개선	0	270,000	27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 → 270,000 (27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수방대책 사업		144,228,521	145,128,521	900,000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2,120,000	3,020,000	900,000	(205-401-01) 시설비 ◦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소통대책 용역 등 공사비 215,000 → 1,065,000 (850,000) ※ 부기명 수정 (205-401-02) 감리비 ◦ 감리비 85,000 → 135,000 (5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물 순 환 안 전 국	943,845,650	943,845,650	0	[+ 9건 9,560,000 △ 5건 △9,560,000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 관리 (상하수도·수질)	400,308,064	400,308,064	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로 신설개량	197,977,706	197,620,706	△357,000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	8,000,000	8,160,000	16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 8,000,000 → 8,160,000 (160,000) ▸ 영등포구 침수방지 빗물관리 확충사업 0 → 60,000 (60,000) ▸ 종로구 침수방지 빗물관리 확충사업 0 → 50,000 (50,000) ▸ 광진구 침수방지 빗물관리 확충사업 0 → 50,000 (50,000)
		중흥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	1,437,000	920,000	△517,000	(303-401-01) 시설비 ◦ 공사비 1,437,000 → 920,000 (△517,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로 보수보강	53,999,000	57,469,000	3,470,000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1,054,000	13,184,000	2,13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 11,054,000 → 13,184,000(2,130,000) ▸ 방화동 842-5 서남물재생센터간 사각형거 보수 0 → 2,130,000 (2,130,000)
		종량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22,752,000	24,092,000	1,34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 22,752,000 → 24,092,000 (1,340,000) ▸ 방학로3길 120일대 원형관로 보수 0 → 600,000 (600,000) ▸ 해등로 166 주변 등 5개소 원형관로 보수 0 → 900,000 (900,000) ▸ 도봉로139길 55-5주변 외 6개소 원형관로 보수 786,000 → 626,000(△16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0,628,500	119,128,500	△1,500,000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3,324,500	11,824,500	△1,500,000	(303-401-01) 시설비 ◦ 공사비 12,054,500 → 10,554,500 (△1,500,000)

(단위 : 천원)

(물재생계획과) 일반예산(재무활동)		39,439,914	37,939,914	△ 1,613,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	39,439,914	37,939,914	△ 1,613,000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17,214,413	15,601,413	△ 1,613,000	(303-702-01) 기금전출금 ◦ 기금전출금 17,214,413 → 15,601,413 (△ 1,613,000)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상하수도·수질)		260,323,190	257,513,190	△ 2,81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생시설 개선	37,654,570	31,724,570	△ 5,930,000	
	차집관로 성능개선	14,060,000	9,030,000	△ 5,03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당현천) 7,800,000 → 4,200,000 (△ 3,600,000) (303-403-02) 공공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탄천) 6,260,000 → 4,830,000 (△ 1,430,000)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1,378,370	478,370	△ 900,000	(303-401-01) 시설비 ◦ 공사비 931,370 → 31,370 (△ 9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222,668,620	225,788,620	3,120,000	
	서울물재생시설 공단위탁사업비	212,227,492	215,347,492	3,120,000	(303-308-13) 공공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상적위탁사업비 189,146,502 → 189,716,502 (570,000) ▸ 탄천·서남 노후 침입감지시설 개선 0 → 500,000 (500,000) ▸ 물환경 체험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0 → 70,000 (70,000) (303-403-02) 공공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자본적위탁사업비 23,080,990 → 25,630,990 (2,550,000) ▸ 서남물재생센터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0 → 550,000 (550,000) ▸ 서남물재생센터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0 → 2,000,000 (2,000,000)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상하수도·수질)		123,595,000	124,795,000	1,2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15,600,000	16,800,000	1,200,000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5,460,000	6,060,000	60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 5,460,000 → 6,060,000 (600,000) ▸ 스컴스키머 0 → 600,000 (600,000)

(단위 : 천원)

		하수 및 슬러지 이송설비 유지보수	2,590,000	3,190,000	60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 2,590,000 → 3,190,000 (600,000) ▶ 세목제진기 0 → 600,000 (600,000)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상하수도·수질)			82,549,674	84,159,674	1,610,000	
	(공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15,610,000	17,220,000	1,610,000	
		기전설비 유지보수(공통 분야) 및 안전진단	600,000	750,000	15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 600,000 → 750,000 (150,000) ▶ 난지물재생센터 노후 침입감지시설 개선 0 → 150,000 (150,000)
		차집관로 보수공사	6,420,000	7,110,000	69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 6,420,000 → 7,110,000 (690,000)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7,860,000	8,630,000	770,000	(303-401-01) 시설비 ◦ 시설비 7,860,000 → 8,630,000 (770,000)

□ 도시기반시설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도시기반시설본부			(x54,474,000) 1,378,079,317	(x54,474,000) 1,389,079,317	(x-) 11,130,000	[+ 1건 11,130,000 △ 0건 -
재무활동(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806,131,621	817,261,621	11,130,000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292,141,835	303,271,835	11,130,000	
		도시철도건설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92,141,835	303,271,835	11,130,000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95,995,502 → 107,125,502 (11,130,000)

□ 미래한강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미 래 한 강 본 부	149,078,942	150,685,942	1,607,000	[+ 8건 2,508,000 △ 3건 901,000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134,132,805	135,739,805	1,607,000	
		(일반회계)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65,272,454	66,379,454	1,107,000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 관리	2,432,289	2,132,289	△ 300,000	(100-401-01) 시설비 ◦ 야외체력단련장 정비 800,000 → 500,000 (△300,000)
		독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	1,317,006	1,467,006	150,000	(100-401-01) 시설비 ◦ 독섬 자벌레 시설 개선 0 → 150,000 (150,000)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2,110,595	2,148,595	38,000	(100-401-01) 시설비 ◦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0 → 38,000 (38,000)
		녹지시설 유지 관리	8,898,805	9,248,805	350,000	(100-401-01) 시설비 ◦ 식재 및 시설 유지관리 1,500,000 → 1,100,000 (△400,000) ◦ 한강 주요 거점 꽃밭 조성 0 → 400,000 (400,000) ◦ 한강 맨발걷기길 조성 0 → 350,000 (350,000)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 관리	1,074,791	1,204,791	130,000	(100-201-02) 공공운영비 ◦ 스마트팜 등 유지관리 0 → 30,000 (30,000) (100-401-01) 시설비 ◦ 생태공원 스마트팜 설치 0 → 100,000 (100,000)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3,352,758	3,952,758	600,000	(100-401-01) 시설비 ◦ 보행로 유색포장 0 → 300,000 (300,000) ◦ 경사로 정비 0 → 300,000 (300,000)
		화장실 유지관리	2,184,600	2,524,600	340,000	(100-401-01) 시설비 ◦ 화장실 신규설치 및 재정비 0 → 340,000 (340,000)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303,000	102,000	△ 201,000	(100-401-01) 시설비 ◦ 조형물 철거, 지면 원상복구 등 비용 201,000 → 0 (△201,000)
		(일반회계)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5,426,808	5,926,808	5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한강사계절 축제	953,143	1,153,143	2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한강 보트퍼레이드 0 → 200,000 (200,000)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	584,750	884,750	3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 책읽는 한강공원(강서) 0 → 100,000 (100,000) ◦ 책읽는 한강공원(광나루) 0 → 100,000 (100,000) ◦ 책읽는 한강공원(이촌) 0 → 100,000 (100,000)

☐ 서울역사박물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서울역사박물관	(×273,000) 17,039,187	(×273,000) 17,040,687	(x-) 1,500	[+ 1건 1,500 △ 0건
(총무과)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273,000) 15,463,791	(×273,000) 15,465,291	(x-) 1,500	
	(일반회계) 관람 지원기반 구축		(×273,000) 6,166,199	(×273,000) 6,167,699	(x-) 1,500	
		박물관 유지·운영	(×273,000) 2,122,807	(×273,000) 2,124,307	(x-) 1,500	(100-204-02)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0 → 1,500 (1,500)

☐ 시립미술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시립미술관	17,086,284	(×90,000) 17,030,442	(×90,000) △55,842	[+ 2건 91,800 △ 1건 △147,642
(총무과) 문화예술 진흥			14,940,500	(×90,000) 14,884,658	(×90,000) △55,842	
	(일반회계) 미술관 운영 활성화		6,138,374	(×90,000) 6,080,732	(×90,000) △57,642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 화추진)	326,442	178,800	△ 147,642	(100-401-01) 시설비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117,700 → 0 (△ 117,700) ◦ 정밀안전진단 29,942 → 0 (△ 29,942)
		북서울미술관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x-) -	(×90,000) 90,000	(×90,000) 9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프로그램 운영 등 0 → 85,050 (85,050) (100-301-09) 외빈초청여비 ◦ 해외 작가 초청여비 등 0 → 3,900 (3,900) (100-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전시 교육 회의 실비 등 0 → 1,050 (1,050)
	(일반회계)	미술관 유지보수	3,540,351	3,542,151	1,800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687,023	1,688,823	1,800	(100-204-02)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0 → 1,800 (1,800)

□ 의회사무처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의 회 사 무 처	(x-) 37,691,947	(x-) 38,091,947	(x-) 400,000	[+ 3건 400,000 △ 0건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x-) 21,476,501	(x-) 21,776,501	(x-) 300,000	
	(일반회계)	의회청사 환경개선	6,993,332	7,293,332	300,000	
		의회 청사 유지 관리	2,285,451	2,385,451	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의회 체력단련실 운영 개선 0 → 20,000 (2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의회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 0 → 80,000 (80,000)
		의회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	200,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 타당성조사 용역 0 → 200,000 (200,000)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x-) 11,552,029	(x-) 11,652,029	(x-) 100,000	
	(일반회계)	의정활동 홍보 사업	(x-) 9,475,834	(x-) 9,575,834	(x-) 100,000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7,385,290	7,485,290	100,000	(100-207-02) 전산개발비 ◦ 서울시의회 가상건축 프로그램 구축 0 → 100,000 (100,000)

☐ 감사위원회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감 사 위 원 회	2,169,264	2,174,184	4,920	[+ 1건 4,920 △ 0건
(감사담당관) 시정 청렴도 향상			254,600	259,520	4,920	
	(일반회계)	시정 청렴도 향상	254,600	259,520	4,920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205,400	210,320	4,920	(100-204-02) 특정업무경비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0 → 4,920 (4,920) · 4급 0 → 600 (600) · 5급 이하 0 → 4,320 (4,320)

☐ 자치경찰위원회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자 치 경 찰 위 원 회	27,108,781	27,138,781	30,000	[+ 1건 30,000 △ 0건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2,736,186	2,766,186	30,000	
	(일반회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2,097,622	2,127,622	30,000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476,292	1,506,292	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노원구 자율방범대 순찰장비 지원 0 → 30,000 (30,000) ※ 자치구비 매칭(50%) 조건